

제418회국회
(정기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9월4일(수)

장 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간사 선임의 건
- 소위원장 선출의 건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0)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6)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0)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3)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8)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68)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3)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7)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06)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07)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7)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38)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2)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3)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7)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8)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3)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8)

21.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27)
 22.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2)
 23.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7)
 2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07)
 2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4)
 26.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6)
 2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5)
 2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0)
 29.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 가. 여성가족부 소관
 30.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 가. 여성가족부 소관
 31.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현안질의
-

상정된 안건

1. 간사 선임의 건	4
2. 소위원장 선출의 건	4
o 간사 및 소위원장(김상욱) 인사	4
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0)	5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6)	5
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0)	5
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3)	5
7.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8)	5
8.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68)	5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3)	5
1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7)	5
11.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06)	5
12.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07)	5
13.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7)	5
1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38)	5
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2)	5
16.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3)	5
1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7)	5
18.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8)	5
1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3)	5
2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8)	5
21.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427)	5
22.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2)	5
23.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7)	5
2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07)	5
2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4)	5
26.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6)	5
2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5)	6
2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0)	6
29.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6
30.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6
31.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현안질의	6

(14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인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법안 등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아울러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될 예정이라는 점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이번 국회사무처 정기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근무하게 된 직원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김월래 입법조사관입니다.

김혜리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새로 보임한 직원들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보좌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순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우리 위원회 간사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새로 선임한 후에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안, 2023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현안질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고 법안과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서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법안과 결산에 대한 대체토론과 현안질의는 일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2. 소위원장 선출의 건

(14시06분)

○위원장 이인선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서범수 위원님께서 간사직을 계속 수행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김상욱 위원님을 국민의힘 간사로 새로 선임하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예산결산소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 개선이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국회법 제50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 관례에 따라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김상욱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 선출하도록 하려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간사 및 소위원장(김상욱) 인사

(14시07분)

○위원장 이인선 그러면 김상욱 간사님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 반갑습니다. 울산 남구갑 김상욱입니다.

여성 정책과 가족 정책이 정말 중요한 전환 시기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현안에 대해서 여와 야가 많은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 정책과 가족 정책만큼은 여야의 대립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여와 야가 힘을 합쳐서 정말 실천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실행이 이루어지는 그런 22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됐으면 합니다.

국민의힘 간사로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또 우리 야당 위원님들의 말씀도 귀 기울여 듣고 함께 조화롭게 여성·가족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이끌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선 감사합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0)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6)
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610)
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3)
7.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8)
8.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68)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3)
1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7)
11.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06)
12.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07)
13.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7)
1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138)
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2)
16.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3)
1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7)
18.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8)
1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3)
2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8)
21.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427)
22.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2)
23.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7)
2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07)
2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4)
26.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6)

- 2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5)
- 2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0)
- 29.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여성가족부 소관
- 30.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가. 여성가족부 소관
- 31.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현안질의**

(14시08분)

○**위원장 이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현안질의의 건까지 이상 29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오늘 산회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노트북 단말기에 있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나오셔서 여성가족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존경하는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크신 가운데에도 여성가족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한 결산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어서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은 210억 3800만 원을 정수 결정하여 117억 5300만 원을 수납하였고, 전년도 이월액 134억 5200만 원과 예비비 151억 7700만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6277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97.6%인 6126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6억 3000만 원을 202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은 25억 3800만 원을 정수 결정하여 10억 26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지역지원계정 743억 5500만 원과 지역자율계정과 제주특별자치도계정 154억 1000만 원을 합한 897억 6500만 원으로 이 중 99.8%인 896억 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양성평등기금은 총 6902억 2100만 원을, 청소년육성기금은 총 1806억 200만 원을 조달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과 정책 제안은 향후 정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안과 결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오늘 상정한 법률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현안질의와 관련된 보고를 먼저 받은 후 현안질의와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안질의를 위해 교육부 배동인 정책기획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엄열 정보통신정책관, 법무부 한상형 형사법제과장, 국방부 유균혜 군인권개선추진단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김병찬 수사국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동수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께서 뒤에 출석하였습니다.

각 부처로부터 준비된 보고를 받아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으로부터만 보고를 받고 다른 부처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 개발로 일반인도 제작이 쉬워지면서 주변 사람들의 사진을 성폭력 이미지나 영상으로 바꾸는 성범죄, 즉 디지털 기술로 가짜 사진이나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는 디지털성범죄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의 단체 대화방과 채널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이 생성·유포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건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연령대가 낫다는 사실이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유포되고 있는데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함께 유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한으로 재생산할 수 있고 일단 유포되면 완벽한 삭제가 불가능한 인터넷 공간의 특성상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끼치며 피해자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안질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과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여야 위원님들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신영숙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보고를 듣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한규 위원 아니, 보고 관련해서……

○위원장 이인선 보고 관련해세요? 예.

○김한규 위원 저도 시간상 서면 자료를 다 볼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최소한 관련 업무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과학기술정통부하고 경찰청은 간략하게라도 구두로 개요를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지금 중계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료 내용들이 다른 부분들은 아마 질의에서 거의 커버가 될 것 같은데 이 2개가 가장 중심인 것 같아서 한 5분 이내로 간략하게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그러면 신영숙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경찰청 보고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고 2개를 듣도록……

○김한규 위원 과기정통부……

○위원장 이인선 과기정통부였습니까?

○김한규 위원 예.

○위원장 이인선 그러면 민주당 간사께서 제안하신 대로 직무대행께서 보고를 하시고, 시간상 저희가 보고서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만 그래도 육성으로 지금 듣고자 하시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그리고 경찰청 수사본부 수사국장님께서 나오셨으면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현황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딥페이크에 의한 가짜뉴스, 성적 혐위영상물 유포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접수된 혐위영상물 피해는 19년 144건에서 23년 423건으로 약 3배 증가하였고, 올해 상반기 6월까지 접수된 피해 건수는 726건으로 이미 전년도 한 해 동안의 피해지원 건수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학가와 초중고, 군에 이르기까지 딥페이크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일주일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접수된 혐위영상물 관련 피해 건수는 107건입니다.

2쪽, 그간의 추진 경과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성적 혐위영상물 확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방통위, 경찰청, 방심위 등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동으로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4월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과기정통부와 협업하여 딥페이크 기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적 혐위영상물 피해 접수와 상담이 가능함을 안내하였고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홍보자료를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였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과기정통부와 협동으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피

해지원 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딥페이크 탐지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3쪽, 추진 방안입니다.

먼저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성적 허위영상물 등 유포 현황 모니터링 및 삭제 지원 등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내 딥페이크 성범죄 전담 대응팀을 운영하여 피해 접수 상담 등 신속하게 지원하고,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발견 시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피해 접수 앱과 전용 상담 채널을 통해 피해 접수 및 피해지원 기관에 연계하고, 지자체의 디지털성범죄 지원 기관과 전국 14개 지역 특화상담소를 통해 피해자가 주거지 인근에서 치유 프로그램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기술적 조치와 관련 과기정통부와 협업하여 이미지 합성 기술을 탐지하고 사진 한 장으로도 성적 허위영상물을 추적할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피해자의 이름, 직장, 학교 등 신상정보가 유포된 경우에도 삭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 및 지자체 지원 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서 지역 단위에서 피해자를 촐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신속한 상담을 위해 각 기관의 대표 전화번호를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1366 여성긴급전화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폭박·강요한 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방교육 관련하여 일반 국민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시 딥페이크 성범죄 등을 포함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등 신종 성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폭력예방 교육 지침 개정, 성적 허위영상물 등 신종 범죄 예방 및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아울러 딥페이크가 심각한 범죄임을 알리기 위해 국정 홍보 웹툰, 전광판, 카드뉴스 등을 배포하고 문체부와 협력하여 홍보 영상을 제작·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쪽, 향후 계획입니다.

관계부처 대응 지도 그림과 같이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법무부, 경찰청, 교육부, 방통위, 과기정통부 등 여러 부처와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새롭게 수립 중인 제2차 여성폭력방지기본계획에도 반영하여 이행 현황을 지속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성적 허위영상물 확산 차단과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서면 대체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두 분만 와서 직접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엄열 국장님 나오셨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관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엄열입니다.

배부해 드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보고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딥페이크의 개념입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가짜의 합성어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해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어 내는 기술입니다. 딥페이크에 사용되는 AI 기술 자체는 가치중립적인 기술입니다만 그 진위 여부가 파악이 어려워서 가짜뉴스, 성범죄, 폐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가 등장, 나온 이후에 일반인들도 쉽게 생성하고 또 SNS를 통해서 급속히 확산되면서 학교, 직장, 군부대, 모든 사회 영역에서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혀위영상물 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에서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75%에 육박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주요국 대응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AI 행정명령을 통해서 AI를 통한 딥페이크 관련돼서 워터마크 표시와 딥페이크 검출 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정부 차원에서 선거 또는 음란물 관련돼서 딥페이크를 규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EU는 최근에 디지털서비스법을 제정해서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검색엔진에 딥페이크 영상이 업로드되는 경우에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AI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AI법 제정을 통해서 AI 기업과 사용자는 AI 생성물을 표시하도록 하는 워터마크제를 규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기정통부 대응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과기정통부는 이 부분에 대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과제로 도출해 냈습니다. 여가부와 함께 AI 생성물 표시제 의무화, 딥페이크 자율규제, 딥페이크 탐지기술 개발 등 관련된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여가부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딥페이크 성범죄 이슈의 복잡성을 고려해서 추가적인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지난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주요 AI 국제기업들과 AI에 대한 워터마크 도입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서울 AI 기업 서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술개발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계속적으로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 탐지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R&D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R&D 성과를 경찰청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개발에

활용한다든지 방심위가 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 다운로드 제한·삭제에 활용하고 있고 최근에는 여가부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피해영상물 검출에 이 부분을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대응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 대응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R&D 과제들의 결과물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수요기관과 R&D 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경찰청, 방심위 그다음에 여가부, 기술 관련된 수요기관들과 기술설명회를 이번 주에 개최해서 이런 디지털 관련된 탐지기술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빠르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 대응입니다.

AI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AI가 생성하는 AI물에 워터마크를 하는 워터마크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법에 토대를 두고 이 AI 생성물에 관한 워터마크 관련된 부분에 대한 처벌조항과 삭제조치 관련된 부분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국제적 대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 AI 기업 서약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여러 디지털 기업들과 함께 기술적 대응 방안, 특히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한 기술적 대응 방안과 선제적인 삭제조치 시행을 위해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내에 AI 안전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연구소의 딥페이크 탐지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AI 안전연구소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배움터라든지 스마트쉼센터, 과기정통부가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역기능 방지 교육기관을 통해서 학생, 학부모, 직장인 대상하에서 올바른 AI 이용 교육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님 나오셨으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경찰청 수사국장 김병찬입니다.

딥페이크 범죄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누구나 쉽게 딥페이크 기술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인이나 유명인들의 일상 사진이나 영상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위협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관련 주요 범죄 발생 유형으로는 겹지인방, 특정인 대상, 특정 직업군 대상, 유명인 대상 등의 범죄가 있습니다.

통계를 보시면 2021년 이후 올해까지 딥페이크 범죄는 매년 증가 추세고 특히 올해 7월까지는 전년 동 기간 대비해서 3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 중 대부분이 10대인 특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근절 대책입니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기관 합동 대응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만 우선 그중 경찰청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찰청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8월 28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허위 영상물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청과 시·도청 간 적극 협력하여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집중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텔레그램 운영자에 대해 성착취물 제작 유포 방조 등의 협의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도경찰청 전담수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고도의 수사기법 및 추적기술 등이 필요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 특성을 감안하여 올해부터 시·도경찰청에서 딥페이크를 포함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2월 정부 최초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고 개발 이후 7월 까지 총 141건의 딥페이크 영상을 탐지하는 등 수사에 적극 활용 중입니다. 현재까지는 딥페이크 의심 영상을 업로드할 경우 80% 정확도로 딥페이크 여부를 판별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이를 더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위장수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시행 4년 차를 맞은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상 범죄를 성인 대상 디지털성범죄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신분비공개수사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착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야간이나 공휴일과 같이 긴급한 경우에는 곧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사후 승인 제도도 도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더해 국제공조도 강화하겠습니다. 해외 주요국 법 집행기관, 국제기구, 해외 IT 기업들과의 공조를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순간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성착취물 범죄의 특성입니다. 이에 세계 공통으로 단속하고 있는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서 국제 대응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회원국 상호 간에 삭제·차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활동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의 대부분이 10대인 점을 감안하여 학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교육, 홍보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피해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 및 심리상담 지원 등 피해자 보호·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찰청에서는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각종 근절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법안 및 결산에 대한 대체토론과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현안질의를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양당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차 질의는 5분, 2차 질의는 3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떤 분께 질의를 하시는 것인지 미리 밝혀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서범수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서범수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차관님,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서 이것…… 기조실장님 이것 보셨지요?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예.

○**서범수 위원** 보셨습니까?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예.

○**서범수 위원** 진짜요?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예.

○**서범수 위원** 뭐 이상한 내용 없습니까?

1페이지에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은 어느 날을 이야기합니까? 왜냐, 제가 왜 이걸 지적하느냐?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장관이 없어서 컨트롤이 되니 안 되니 이 이야기들을 들어요.

왜 이러세요? 분명히 아마 기조실장님 이것 다 봤을 건데 이런 내용 한번 훑어보지도 않고 그냥 나옵니까?

딥페이크 관련해서 여가위 디성센터에서도 아마 탐지를, 모니터링을 할 거고 방심위에서도 모니터링을 하시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 이동수** 예.

○**서범수 위원** 그다음에 경찰청에서도 모니터링을 하시지요? 경찰청도 모니터링하시지요?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예.

○**서범수 위원** 그러면 그 모니터링하는 기법이나 이런 게 전부 다릅니까, 각 부처마다? 디성센터에서 하는 거 그다음에 방심위에서 하는 거, 경찰청에서 하는 거 각 다르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각각 기능이 조금……

○**서범수 위원** 각자도생이지요, 지금 각자?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좀 다르게 운영되고, 기관의 역할하고 목적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과기정통부에서 보고한 2페이지 내용에 보면 중간에 ‘R&D 성과를 경찰청, 방심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활용 중이다’, 실제 활용하고 있습니까? 이게 나눠 줬습니까? 나눠 줘서 활용을 합니까?

디성센터장님, 과기정통부에서 뭐 받아 가지고 활용하는 게 있습니까?

○**한국여성인권진흥원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장 박성혜** 일단 아까 보고해 주신 대로 새로운 딥페이크 탐지기술 등 지금 개발하고 있는 R&D 기술은 저희가 함께 만들어 갈 예정이고 그간은 저희가 18년 4월 30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서범수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과기정통부에서 그런 걸, R&D 성과물을 공유를 하느냐고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장 박성혜** 예, 하고 있고 웹하드 카르텔 있을 때 그거랑 얼굴 인식……

○서범수 위원 알겠습니다.

경찰청 수사국장님, 경찰청에서도 아까 보고한 거 보면 24년 2월 정부 최초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이건 경찰청에서 따로 하는 겁니까?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그렇습니다만 과기부의 협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부……

여가부차관님, 지금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해서 어느 부처가 주무부처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말씀드린 대로 기관의 역할에 따라서 좀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황 보고에, 피해자를 위한 대응 지도를 만들어서 영역별로 어떻게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여가부는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이고……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피해자 보호·지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경찰청은 수사과 범무부는 법적인 정비를 할 거고 꽤 그렇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 놓으니까 전부 각자도생으로 이게 뭔가 취합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비난을 많이 받았지요? 그래서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무조정실에서 총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맞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와 관련해서 회의라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8월 30일 날 국무1차장 주관으로 관련 부처들이 모여서 관련 현황 보고드렸고요. 그다음에 10월 중으로 범부처 대응 계획 만들어서 총괄 발표, 대책 발표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서범수 위원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각자의 역할도 있지만 서로서로 그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뭔가 총괄하는 데가, 오늘 사실은 국무조정실에서 안 나와서 그러는데요 국무조정실이 그립감을 좀 세게 해서 각 역할들 주고 그 역할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뭔가 총괄할 수 있는 이게 있어야 우리가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사실은 각자도생을 해 온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하여튼 여가부차관께서, 장관대행께서 국무조정실하고 잘 협조를 하셔서…… 이것은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부에서 좀 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긴밀하게 협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 딥페이크 성범죄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께서 저희 의원실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로 고통받던 친구가 자살을 시도하면서 글을 남긴 것을 받았는데요. 제가 질의에 앞서 공유하겠습니다, ‘내가 죽어 가는 와중에도 이제는 내가 죽으면 아무도 나를 못 알아보겠구나. 내가 지금 아픈 거는 상관이 없지만 내가 최소한 저승에 가서도 다른 사람들이 내 영상 보는 걸 보면서 안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죽어서까지 안 힘들었으면 좋겠다’.

딥페이크는 이렇게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삶을 무너뜨리는 범죄행위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처 담당자분들께서 무거운 마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가부차관님, 디지털 성폭력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하는 여가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여가부에서 디지털성범죄 관련 삭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제한조치 권한도 부족하고요 방통위 등 기관 간 업무 협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화면 띠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에서 최근 5년간 디지털성범죄 피해 삭제 요청이 93만 건인데 이 중 실제 삭제가 완료된 건수가 66만 건이고 26만 건이 미삭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미삭제 건수가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센터가 피해자로부터 삭제를 요청 받아 불법촬영물이 발견된 플랫폼에 지우라고 요청 하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권리가 없어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지요. 그러면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 화면 띠워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이슈가 된 주요 성착취물 사건을 구글에 검색하니 아직까지 피해영상물을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어요. 저희 의원실에서 검색한 내용입니다. 사이트를 클릭해서 누르면 불법촬영물들 수백 건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하지만 네이버나 국내 사이트에서는 문제의 게시물들이 보여지지 않게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과기부 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4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네이버나 구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유통 관련 기술적 조치, 관리 실태 점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관 엄열** 예, 알고 있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리고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점검하고 미이행할 경우에 과징금 물릴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관 엄열** 예, 알고 있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러면 이와 같은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조치 미이행을 이유로 통신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물린 사례가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관 엄열** 죄송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사무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과징금 아마……

○**김남희 위원** 예, 그런 사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화면 띠워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물 피해 관련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낸 일이 있습니다. 바로 아까 본 것처럼 구글 같은 해외 사이트의 불법촬영물 관련 접속 차단해 달라고 기업에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한 건데요.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심위로 넘겨서 심의조치하라는 답변 공문을 여가부에 회신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방통위가 사업자를 직접 규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알아서 삭제하라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공문에서 요청한 불법촬영물이

반복해서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이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과기부 정책관님, 적어도 이미 문제가 돼서 이렇게 피해자들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불법영상물들 검색 안 되도록 사전 조치하고 기업이 안 하면 과징금 처분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관 엄열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남희 위원 그러면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경찰청 김병찬 수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딥페이크 범죄 수사 어렵다면서 수사 현장에서 소극적으로 수사 이루어진 사례 너무 많습니다. 인하대 딥페이크 사건도 피해자가 신고했지만 경찰에서 피의자 특정 어렵다면서 수사 중지했고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피해자가 추적해서 검거했지요. 딥페이크 관련 범죄 검거율이 50% 이하에 불과합니다.

이번에 경찰이 텔레그램 수사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딥페이크 대책이라며 성인에까지 위장수사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성착취 범죄에 대해서 위장수사 대상 안 되는 것 아세요?

법에 딥페이크 관련 범죄는 위장수사 대상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대책을 발표하면서 성인에 대해서까지 확대하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위원장 이인선 위원님, 다음 추가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 딥페이크 문제가 성범죄로, 우리 사회문제로 이렇게 크게 이슈화되고 아까 경찰청에서도 했듯이 10대 피의자가 70%가 넘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크게 보면 호기심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처음에는 재미있는 영상에 다른 친구들, 자기 얼굴 올려서 이렇게 얹어 보니까, SNS에 하니까 조회 수가 많아지니까 신이 나서 점점 다른 콘텐츠를 계속 제작하다가 빨려 들어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현상을 보면서, 우리 행안위에서도 경찰청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청소년들의 놀이문화로 있었던 걸 미리 예방하고 이게 범죄라는 사실을 확실히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늦었구나…… 늦지 않았습니다.

여기 2페이지 현황 보고에도 보면 27개 과제에서 초중고 대상 성착취 예방교육 콘텐츠를 제작·보급하겠다, 여가부가 그렇게 했고. 그러면 예방교육과 제작자 차원에서는 사업자들이 불법 콘텐츠가 있을 때 AI를 만들어 심어서 삭제 의무를 법제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콘텐츠 안에서 이런 불법적이고 특히 청소년·아동 성착취에 관련된 것은 무조건 24시간 안에 의무적으로 삭제하는 법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청소년 교육에 치중해서 보면 차관님, 여기 보면 콘텐츠 제작해서 보급하겠다고 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이달희 위원 21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가부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이달희 위원** 시행해서 오늘 보고자료 5페이지에도 21년에 17종, 22년에 14종, 23년에 16종, 24년에 3종 이렇게 계속 콘텐츠를 보급하고 있는데, 디클이라는 곳이지요. 디지털 클린룸에서 하고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이달희 위원** 혹시 거기에 올라온 콘텐츠 보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제가 그 사이트는 들어가 봤는데 하나하나 천천히 다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제대로 다 보지 못했습니다.

○**이달희 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예산을 들이고 21년도부터 AI 기술이, 딥페이크가 형성이 되면 불법으로 또 이렇게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가지고 놀 수 있겠다 해서 예산을 들여서 21년부터 콘텐츠를 제작했는데 그러면 이 제작이 어린이들 교육에, 청소년 교육에 쓰였는지 그걸 체크해야 되는 게 우리 공직자들의 일인데 그게 무시된 것 같습니다.

차관님께서도 이런 사이트는 있는데 콘텐츠 하나하나를 못 보셨잖아요. 이거 가지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선생님이나 학부형들께서 어린이들하고 보여 주면서 교육하라 이거 아닙니까. 맞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이달희 위원** 저희 방에서, 저는 차례대로 다 봤습니다. 보니까 10분, 50분, 어린이들이 앉아서 10분, 50분 보겠습니까? 그런데 딥페이크 성범죄에 관련해서는 그 안에서 10초, 20초 아주 빠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 이런 것 하면 친구들이 싫어하겠구나. 그냥 이 정도면 어른들이 하지 말라 하네’ 이 정도지 이렇게……

그 영상을 보여 주라는 건 아닙니다. 이런이런 것은 얼마나 피해가 심각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이런 것을 제작을 해서 친구들한테 퍼 나르고 하면 범죄가 돼서 경찰한테 진짜 붙잡혀 간다는 정도의 교육을 확실히 시켜야 되는데 전혀 그런 영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부하고 또 애들이 집중할 수 없는 정도의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 와서 굉장히 실망한 것은 여기에 들어 있는 학생들 지금 제일 문제가 10대인데 10대들은 예방교육이 중요한데 그 콘텐츠를 차관님께서 아직 안 보셨다는 게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저도 미성년자가 이렇게 디지털 공간에서 범죄행위로 야기될 수 있는 그러한 양상을 한 부분에 굉장히 충격을 이번 기회에 많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콘텐츠가 수요자, 특히 지금 10대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아 위원**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위원입니다.

지난 26일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딥페이크 범죄 피해 학생, 피해 학교가 특정되는 명단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학생, 청소년, 교사들까지도 무차별적으로 피해를 입는 상황이 되었고 학부모들까지 광범위하게 지금 불안이 확산됐는데요.

교육부 정책기획관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학생·교원, 학교 현장 피해 현황 파악하고 계시지요?

○**교육부정책기획관 배동인** 예, 그렇습니다.

○**백승아 위원** 자료 보니까 8월 27일 기준으로 169건 파악하고 179건 수사 의뢰하셨는데 현재……

○**교육부정책기획관 배동인** 196건입니다.

○**백승아 위원** 196건이 전부 삭제되었습니까?

○**교육부정책기획관 배동인** 삭제 여부 확인까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백승아 위원** 확인까지는 못 하고 요청하셨다는 거지요?

○**교육부정책기획관 배동인** 예.

그런데 그거 삭제를 최종 확인하려면 당사자한테도 물어봐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은 2차 피해 관련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백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적 약자고 미성년자인 학생들과 청소년들은 최우선적으로 보호받고 지원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교육부는 어떻게 이런 대책을 마련하고 계실까요?

○**교육부정책기획관 배동인** 먼저 예방교육이 철저하게 되지 못했다라는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은 지금 현재 EBS하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백승아 위원** 예방교육 외에 어떤 대책은 없나요?

○**교육부정책기획관 배동인** 그리고 일단은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신고 체계라든가 피해를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고 어떻게 삭제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학교 현장에 했습니다. 했고, 또 학교 단위에서 예방교육들을 현재 다 실시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백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여가부차관님, 지금 삭제 지원 시스템에서 피해 청소년 게시물 우선 삭제할 수 있나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백승아 위원** 어려움이 있겠지만 청소년들을 먼저 보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대책 마련해서 앞으로도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백승아 위원** 교육부 국장님, 지금 교육부가 확인한 피해 규모 193개 학교 196명이에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피해 학교 수가 500여 개에 달한다고 보도했는데 확인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교육부정책기획관 배동인** 이게 아무래도 성 사안이다 보니까 이렇게 노출을 꺼리는 경우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백승아 위원** 제가 초기 대응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보셨습니까?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여학생만 전원 강당으로, 이게 딥페이크 터진 학교에서 여학생들만 강당으로 불러내서 ‘SNS 사진 내려라. 조심해라’, 그 시간 동안 남학생들은 축구를 했다고 해요. 여학생이

사진을 올려서 딥페이크 범죄가 일어난 겁니까? 왜 여학생들을 통제합니까. 이 학교의 대응 방식 너무나 문제가 큽니다.

다음 사진도 보시지요.

'학교에서 딥페이크 쓴 학생 잡는 법'이라고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익명성 보장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딥페이크 관련 텔레그램 사용 유무 설문조사' 이런 제목인데 이게 학생들이 텔레그램을 쓰는지 안 쓰는지를 조사하는 건지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는 건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다 누가 자기가 피해 입었다고 아니면 그 방에 있다고 쓰겠습니까. 익명성 보장이 전혀 안 되는데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딥페이크 학교 명단 공개되고 있어요. 교육청 작성 공문을 좀 보시지요. 해당 교육청에서 모든 학교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우리 교육청은 피해 학교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요. 당연히 없지요. 이렇게 조사하는데 누가 이것을 제대로 구현하겠습니까? 이게 제대로 된 조사, 제대로 된 결과입니까, 지금!

미성년자의 경우에 피해자가 자책하고 겁내고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더 숨어 버려요. 그러면 피해가 더 많아지는 데요. 이렇게 피해자들이 겁내지 않고 피해 사실 밝힐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학교에 피해 현황 일괄 파악하고 결과 의무적으로 제출하라고 하는 이런 대응 2차 가해 발생도 있을 수 있는데 전혀 적절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학생 보호하고 현장 안정화하는 게 한 명의 피해 학생도 숨지 않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교육부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신고 창구 마련하고 안내해야 합니다. 교육청별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 현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혼란이 아주 커요. 어떤 학교는 텔레그램 이용한 딥페이크 범죄 자세히 설명하고 대응을 하는 반면 또 어떤 학교는 그냥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하면 안 된다. 이거 범죄다' 이렇게만 안내하고 있어요. 지금 학교 현장 맞춤형 대응체계를 교육부가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학교라는 공간의 특성상 같은 공간에서 1년 또는 몇 년 함께 지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후속조치 마련해 주시고요. 특히 피해자 지원 어떻게 할 건지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이러한 보고…… 장관이 아니시지요. 지금 장관님도 안 오셨어요, 심지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러한 조사 행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교육부정책기획관 배동인** 제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 **백승아 위원** 예.

○ **교육부정책기획관 배동인** 일단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취지는 다 공감을 합니다. 다만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1차 조사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태조사를 매주 할 겁니다. 매주 해서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저희들은 조금 더 늘어날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피해 보호조치라든가 삭제라든가 이런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언론에 보도된 사항들은 저희들이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로 봄서는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교별 지도도 만들어지고 학교 숫자가 500개 이런 얘기들도 나오지만 저희들이 적어도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백승아 위원** 그 사실 확인을 하실 때 익명성이 보장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교육부정책기획관 배동인** 그 부분은 물론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시도별로 보면 다양한 형태로 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육 주간이라든가……

○**백승아 위원** 제가 현장 교사 출신이에요.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요.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후의 대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인선** 국장님, 백승아 위원님은 현장에 계셨던 분이니까 따로 보고를 잘 드려 주시고 협조 바랍니다.

○**교육부정책기획관 배동인** 예.

○**백승아 위원** 잠시만요. 제가 교육위에서도 그렇고 이번 정부에 정말 실망스러운 것은 국회의원이 자료 요청을 해도 자료를 안 보내고 보고를 하라 그래도 보고를 안 해요.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정책기획관 배동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한지아 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한지아 위원** 지금 딥페이크 범죄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전에는 유명인이 딥페이크 범죄의 주요 피해자였다면 현재는 어린이·청소년·학생 딥페이크라는 게 굉장히 쉽게 유통이 되고 만들어지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딥페이크의 70% 이상이 10대인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거고 4년 만에 2.5 배 이상 늘었다는 부분도 굉장히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상형 법무부 형사법제과장님,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의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피해자가 피의자가 되고 피의자가 또 나중에 피해자가 되는 그런…… 10대라는 사실을 파악하고는 계시는 거지요?

○**법무부형사법제과장 한상형** 예, 최근 10대 관련된 범죄들이 많이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지아 위원** 사실은 10대라도 통계를 보면 나이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바뀌고 또 교육할 수 있는 방법도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10대라고 했을 때 촉법소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그 처벌의 수위가 완전히 달라지고요. 딥페이크는 성범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학생들은 알아야 되고 그 부분들을 강조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교육에 녹아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찬 경찰청 수사국장님, 그런 차원에서 이번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상당수가 10대

인 부분, 이 중에서 14세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지금 통계를 내 주셨는데 이게 한꺼번에 10대로 뭉뚱그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걸 좀 더 세분화해서 내주실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여쭤봅니다.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향후에는 촉법소년인지 아닌지 여부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아 위원 촉법소년인지 아닌지도 중요하고요. 각 나이별로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10대는 우리가 세심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131건 정도 되니까 그걸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예, 최대한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한지아 위원 사실 엄별이 능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딥페이크 범죄는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촉법소년 상한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 과정이 낙인효과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앞으로 법무부에서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관한 부분입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차관님,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동의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한지아 위원 이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삭제 지원을 24시간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최근 기술 발전에 따라서 디지털성범죄 피해 양상이 변화하고 업무량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데 반해서 매년 지원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2020년도 인력이 한 67명, 그때는 n번방 사태로 67명인데 2021년부터 지금까지 죽 39명으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39명 중에서 24명은 정규직이지만 15명은 기간제입니다. 그래서 기간제 인력이 매년 12월 30일 자로 계약이 만료되고 있고 그때마다 다시 계약 만료된 분을 신규 채용하면 업무 공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총 지원 건수가 5년 사이에 2배가량 늘었고 삭제 지원 건수도 2배 넘게 늘었는데 현재 인원 수는 4년째 똑같고 40%가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아무래도 업무의 전문성이라든가 일을 하는 여러 가지 직무 특성상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근무를 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인건비에 대한 예산을 해마다 많이 증액을 못 시켜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래도 2명 더 증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 계약직 분들이 애를 써 주고 계시고 그다음에 채용 과정에서 조금 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국회에서 논의 거쳐 주시면 열심히 노력을 해서 확보하겠습니다.

○**한지아 위원** 이 부분 적극적으로 좀 살펴 주시고 또 기술개발에 대해서도 과기부랑 각별히 신경 써 주셔서 인력 부분을 메워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참 충격적이지요. 참 충격적입니다. n번방 사건 있을 때도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얼마 전에 서울대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영혼까지 빼앗기고 죽고 나면 이 아픔이 지워질까 이러는데 누군가는 장난으로 시작하고 살짝 피해 주고 그걸 쾌감을 느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더 망가지는 건데……

대한민국의 디지털성범죄, 예를 들어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취약국 1위가 어디입니까, 차관님?

박성혜 센터장님, 1위가 어디입니까? 저희가 본 자료로는 딥페이크에 등장하는 피해자 국적을 보면 1위가 한국이에요. 1위가 한국이고 2위가 미국이고 이런 데요. 미국이 20%면 한국이 53%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해결하는 데 가장 앞장서시는 분이 한국 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장 박성혜 센터장인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을 빨리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현장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것 해결하는 데 여러분만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법무부, 경찰, 방심위, 교육부까지 다 불러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입니다. 저도 법사위를 하고 있고요. 오늘 만나신 분들이, 나오셨지만 오늘을 계기로 큰 컨트롤타워가 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부 다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 어디 하나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꼭 컨트롤타워가 돼 주시고, 오늘은 여가위로 오셨으니 차관께서 그 일의 중심이 돼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알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딥페이크 사태 관련해서…… 맨 처음 것 띄워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면)

저기는 군인들입니다. 제가 저 안에, 키워서 봤더니 정말 보기 가 무서워요. 여성 군인이 남성 군인에게 문제 제기했더니 그 여성 군인 짹 벗겨 버리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 폭파됐다고 하는데요. 언론 보도 나왔었으니까, 언론에 이 사진 나왔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추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경찰과 법무부가 추적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법무부 어디 계십니까?

○**법무부형사법제과장 한상형** 형사법제과장 출석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형사법제과장님께서 좀 집중이 돼서 해 주시고.

경찰에서는 누가 나오셨습니까?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수사국장 나왔습니다.

○**서영교 위원** 수사국장님, 수사국장님이 제일 중요한 분이시네요.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위원님, 그런데 저 부분은 저희들도 체크를 해 봤는데 피해자

나 이런 분들의 제보나 신고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없고 국방부에서……

○서영교 위원 여기 방 폭파됐다는 거예요.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예, 없어서……

○서영교 위원 그러면 언론 보도해 주신 분에게 찾아가야지요, 이것 어떻게 봤는지 그리고 남은 다른 흔적들은 없는지. 그래야지 이 피해자가 연락해 오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수사국장님께 한마디 여쭤볼게요.

그러면 텔레나 이런 데 딥페이크가 만연하는데 텔레그램 쪽으로 연락은 해 봤습니까?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지금 국방부 사건으로는 한 적이 없고요.

○서영교 위원 아니, 다른 것 말씀하시라고요.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다른 사건으로는 텔레그램에 연락을 많이……

○서영교 위원 했는데 답이 있어요, 없어요?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그동안에 없었고요 앞으로는 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동안 답이 없었는데……

누가 방심위입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 이동수 이동수 국장입니다.

○서영교 위원 방심위에서 잘하셨어요.

제가 경찰하고 직접 통화했는데 ‘위원님, 2020년대부터 저희가 텔레그램은 수십 번을 연락해도 답이 없습니다’ 그랬지요?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예.

○서영교 위원 ‘수사에 협조하지 않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방심위가 연락을 했는데 답이 온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 이동수 답이 왔습니다.

○서영교 위원 5일 만에 답이 왔다면서요? 아무리 텔레그램이라도 답을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텔레그램이 텔레그램으로서의 역할을 해야지 이렇게 성범죄의 온상이 되는데 그대로 있겠습니까?

피해자가 경찰을 찾아갑니다. 경찰에 찾아가서 이야기했더니 ‘해외에 서버가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 피해자가 돌아오면서 뭐 하겠습니까? ‘내가 목숨끊는 것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오늘 이렇게 만나셨으니 수사국장님께서 방심위하고…… 방심위가 노력을 해 주세요. 잘하셨고요. 지금 이걸 할 수 있는 곳은 방심위예요. 수사국은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 이동수 알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영교 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방심위가 나서서 텔레……

그리고 지금 ‘야X코리아’는 뭡니까, 야X코리아? ‘야동코리아’라면서요? 이것도 언론에 나왔는데 거기에 우리도 들어가 보려고 했더니 어떻든 인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없이 남아 있는 것 저는 경찰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방심위가 그것

다 찾아 주세요. 과기부, 찾아 주세요. 이것 다 있잖아요. 방법 알잖아요.

제가 카카오에 물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 관련한 것들이 올라오면 미리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카카오는 우리가 행안위 때 많이 불러서 이야기를 했는데 장치를 마련해 놨지만 또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딥페이크나 이런 것은 카카오에는 없다고 해요. 그러면 방심위하고 과기부하고 다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여가위가 아주 잘한 현안질의라고 생각하고 오늘 다 연결해 주시고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하셔서, 그리고 박성혜 센터장께서 사례를 빨리빨리 전달해 주고 아픔을 전달해 주십시오.

그래서 방심위가 이 부분에서 잘했다고 말씀드리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법무부도 대책을, 사실은 법무부가 많은 역량을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대책을 세워주면 좋겠는데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법무부형사법제과장 한상형**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의 특수성 때문에 세계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인터넷 서비스를 합친 업체들은 세계에 상당히 다양하게 있고 그런 업체들과 관련해서 국제 수사 공조가 이루어지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그 데이터를 정식 절차로, 정식 공조 절차로 받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보통 90일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그것을 끊어 놓을 수 있게 하는 부다페스트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70여 개 정도 나라가 가입을 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난 2022년에 가입의향서를 제출하고 작년에 그쪽에서 초청을 받아 가지고 가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성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다른 국제공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지금은 텔레그램인데, 90일 이것은 늦어서 안 되고요 방심위랑 같이 해서 빠른 대처를 좀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무부형사법제과장 한상형** 그 90일이 증거를 보존할 수 있도록, 90일 동안 증거를 끊어 놓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서영교 위원** 예, 끊어 놓게.

○**위원장 이인선** 그렇게 공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수사국장이 조금 더 보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수사국장, 깊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서영교 위원님 방금 질문하신 부분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야X코리아’ 그 부분은 경찰에서 지금 수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국방부 그 부분은 제보자는 만났지만 단서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수사 착수를 지금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영교 위원** 단서를 만드셔야지요.

○**위원장 이인선** 서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청주 흥덕의 이연희 위원입니다.

지금 딥페이크가 뜨거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국민의 관심도 높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대응책, 대책을 보면 정말 너무 한심하고 일회성이고 보여 주기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그리고 종합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먼저 차관님, 지난 8월 30일 날 딥페이크 관련해서 범정부 대책회의를 개최했지요. 그날 여러 관계부처가 모였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이연희 위원** 거기에 관계부처들이 다 모였을 때 총괄 주무부처는 어디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일단 대응책은 국조실에서 총괄을 하기로 하셨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날 회의를 국무1차장이 주재를 했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이연희 위원** 국무1차장이 이런 딥페이크, 여성 성폭력 관련한 것에 대해서 전문가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전문가는 아니지만 국무조정실의 성격상 각 부처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조정하고 총괄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연희 위원** 차관님, n번방 사태가 있을 때 관련한 비슷한 범정부 대책회의가 열렸는데 그때는 여성가족부장관이 회의를 주재하고 총괄 주무부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아무런 전문성도 없는 국무1차장이 뭘 안다고 딥페이크 관련 범정부 대책회의를 주재합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 지원이나 보호 위주의 여가부 기능에 국한된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 부처가 나와 있듯이 수사……

○**이연희 위원** 물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권익증진국장이 2월부터 공석인데 임명됐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현재 저희 전담직대가 국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차관님, 권익증진국에 7개 과가 있는데 그 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부서들이 있는지.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말씀드리면 권익정책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권익구조과가 있고 그다음에……

○**이연희 위원** 성폭력방지과가 있고 디지털성범죄방지과가 있고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가 있고 폭력예방교육과가 있고 인권침해방지과가 있고 아동청소년성보호과가 있어요. 이 부서들이 다 딥페이크와 관련한 주무부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국무1차장이 범정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대책이 나오겠어요. 차관,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위원님, 말씀드리기 조금 외람되지만 n번방 사태도 국조실에서 전체적인 부분들은 총괄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지금 여기 우리 여가위 회의에 다행히 많은 관련 부처 실무 국장들 오셨지만 이런 회의를 여성가족부 차관·장관께서 주재를 하셔야 되는 거고 관련한 주무,

관련 실무 내용은 권익증진국장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저희가 필요하다면 그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효과적인 정책이나 대응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조실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회의가 개최된 것입니다. 장관님이 공석이어서 그 기능이 쇠퇴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차관님은 앞으로 정부의 딥페이크 종합적 대책, 일관성 있는 대책을 위해서 여가부가 관련 정부 대책의 총괄 주무부처로 역할을 하겠다고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건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여가부의 기능에 따라 피해자 보호하고 지원, 예방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권익증진국장은 언제 임명할 예정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저희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가 작년에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 때문에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장관의 공석에 따른 문제가 아니고……

○**이연희 위원** 빨리 임명을 하세요. 관련 주무 국장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감사나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마무리되면……

○**이연희 위원** 그런 것을 하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말씀하시는 대책들이 다 보여주기식이고 일관성이 없고 일회성이 이런 비판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딥페이크 범죄를 막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해당 딥페이크를 삭제하는 건데 그런데 이 디지털성범죄 피해물 삭제 지원하는 부서가, 기관이 지금 여가부 산하에 있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입니다. 줄여서 디성이란 이름으로 하는데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2억이 줄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내년 예산이 준 것은 디지털성범죄의 시스템적인 부분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서버가. 그래서 순감을 했던 부분이고요. 운영이라든가 인건비는 순감되지 않았습니다.

○**이연희 위원** 아니, 오히려 지금 딥페이크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그 삭제와 관련한 예산을 더 들려야 되는 거고 인력도 더 들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겨우 2명밖에 들리지 않았는데 지금 41명 가지고 이런 삭제 업무를 할 수가 있어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 당국하고 대책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더 필요한 부분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보충질의에서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예, 추가질의 때 해 주시고요.

아마 디지털성범죄 센터의 예산은 서버 이중화 문제로 일괄적으로 끝이 났기 때문에 지금 줄어들었지만 전체 예산이 줄지는 않은 걸로 아는데 여가부차관님께서는 그 예산 관련은 반드시 위원님한테 다들 찾아가서 협조를 요청하시면서 예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다음은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시간 카운트하지 마시고요.

이동수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님 잠깐 나오…… 거기서 하십시오.

텔레그램 측에서 어제 공식 이메일 보내 왔다는데 맞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 이동수 예, 맞습니다.

○조은희 위원 우리 정부가 텔레그램에서 불법 콘텐츠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았다, 사과한다는 내용이었다는데 맞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 이동수 맞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서 소통할 전용 이메일을 새로 알려 왔다는데 맞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 이동수 맞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 이메일을 통해 신고 대상 콘텐츠가 삭제됐는지 여부를 즉각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 이동수 사실입니다.

○조은희 위원 어떻게 확인한다는 겁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 이동수 그 전에는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삭제가 회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삭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 회신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해당 건의 정보에 대해서 삭제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 삭제가 됐다라는 회신을 주기로 그렇게 메일이 왔습니다.

○조은희 위원 회신을 받는 것이 확인 방법이라는 겁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 이동수 예.

○조은희 위원 그러면 경찰청, 방심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성센터 이런 곳에서 다 딥페이크 불법촬영물에 대응하고 있는데 꼭 방심위만 전용 이메일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기관들과 공유해서 함께 대응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 이동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현재 고민에 좀 빠졌습니다. 지금 저희 쪽으로 연락온 텔레그램 측하고도 신뢰 관계를 쌓기 위해서—거의 처음 소통이 됐습니다—텔레그램 측하고 서로 회의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 고민에 빠졌는데 텔레그램하고 신뢰 관계를 구축해서 고민을 해결해서 경찰청과 여성인권진흥원 디성센터랑 공유하는 것을 해결하는 해결책은 언제 낼 겁니까? 고민에 빠진 기간, 솔루션을 낼 기간은 언제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 이동수 저희도 가급적 빨리 진행을 하고자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단계에서는 우리……

○조은희 위원 국장님의 빨리하는 그 탁탁탁 가는 시간은 언제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 이동수 직접적으로 시간적인 걸 제가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은희 위원 여성인권진흥원장님, 할 말 있으시면 지금 빨리 하십시오.

제 시간 많이 쓰지 마시고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입니다.

어제부로 센터에서 피해 합성물과 관련한 피해 삭제 요청 66건에 해당하는 것을 텔레그램 abuse@telegram.org로 보냈지만 현재 회신 통보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은희 위원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 이동수 그전에 여성인권진흥원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쪽으로 심의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급한 사항들은 지금이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넘겨 주시면 저희가 즉시 텔레그램 측에다 요청을 해서 삭제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자, 지금 소통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상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일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쪽에서 즉각 확인할 수 있다, 대답을 해 주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대답을 해 주겠다가 머스트(must)입니까, 해 주겠다, 할 수 있다, 메이(may), 캔(can)입니까? 그러면 그때그때 메일을 확인해서 대답해 줄 수도 있고, 만약 안 해 주면 그때는 어떻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 이동수 어제까지는 텔레그램에서 연락이 와서 소통이 시작이 된 거고요. 텔레그램 측하고 저희가 회의 같은 것을 향후에 계획을 해서 그런 문제들을 짚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때그때 대응이…… 저는 이제 소통을 해서 확인, 답을 보내 주겠다, 일방적인 메아리가 아니다 이것 전전은 전전입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 이동수 예, 알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다른 기관과 공유도 하시고.

그쪽이 갑이어서 보내 주면 그만이고 안 보내 줬을 때 어떤 대응 없이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이 있어야 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 이동수 알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제가 질문이 더 많은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장철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장철민 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깜짝 놀라셨지요.

다음 질의는 임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이 사건을 겪으면서 저는 무엇보다도 피해자들께 정치가 제때 답을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보호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배포된 영상물을 빠르게 삭제하고 이런 영상물을 제작한 사람을 체포하는 것도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먼저 과기정통부의 관계자 정보통신정책관님께 좀 질문드리고 싶은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AI 산업의 발전을 굉장히 강조하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다수가 동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AI 기술산업 발전을 주도하는 과기부 정책 방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진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발전 초기에 진흥을 위한 여러 지원이나 정책을 펴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 이면에서 드러나는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제대로 이루어질까라는 의구심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게 한꺼번에 터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은요 과기부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준비들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정책 과제를 뭐로 제출을 하셨냐 하면 AI 생성물 표시제 의무화, 딥페이크 자율규제, 딥페이크 탐지기술 이것 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특히 AI 생성물 표시제 의무화는 이종호 전 장관 시절부터 과기부가 추진하겠다면서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부분과 관련된 성과가 있으면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관 엄열 위원님, AI와 관련된 진흥 정책뿐만 아니라 이른바 신뢰 있는 AI, 안전한 AI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권리장전의 대부분의 내용도 안전한 AI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입니다. 거기에 여가부와 협력해서 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요.

○임미애 위원 기술개발 측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관 엄열 예, 생성형 AI를 포함해서 국내 많은 기업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임미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술개발과 관련된 것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과기부에 자료 요청했더니 이제 남은 건 입법 과제다라는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AI와 관련된 입법이 되면 이 문제는 마치 다 해결이 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제도 신설의 영역이다 그리고 자기네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도 없다, 추진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답변을 저희 사무실로 보내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n번방 사태 이후에 과기부가 관련 대책 마련하고 기술을 개발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한 것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AI 생성물 표시제 의무화, 일명 워터마크 의무화가 실행될 수 있는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관 엄열 위원님, 시장과 기술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워터마크제를 도입하는 기술적인 문제들은 다 있고요, 사실 시장에서. 그리고 자율적으로 그걸 도입하도록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의무화되는 것은 법적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AI……

○임미애 위원 자율규제와 관련된 건데요 자율규제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스스로 불법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제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요구인데 이게 AI 기술산업 전체라면 모를까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해서는 사실상 구속력이 없는 조치 아닌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관 엄열 위원님, 특히 AI 생성물에 대해서 워터마크와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규제적 요인이 됩니다. 기업들도 이것 부담이 있는 부분들이고 하지만 이게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처벌조항이라든지 예를 들면 사업자 부담 조항들은 국회에서 논의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아까 보고 중에 주요국의 대응 사례를 보면 미국과 EU가 좀 다른데 EU 같은 경우에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검색엔진에 딥페이크 영상을 업로드할 경우에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기술적인 지원은 지금 이미 준비가 끝나 있다는 거고 그러면…… 지난번에 서울 AI 기업 서약 진행하셨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관 엄열**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게 자율규제와 비슷한 거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관 엄열** 위원님, 일단 법적인 그런 요건이 없는 상태에서 시장에서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또 사회 공헌적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갖추고 하는 부분들은 자율적 측면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법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율규제 방식을 하고 있고요.

법적으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AI 생산물 워터마크제는 저희들이 주요 과제로 법에 꼭 넣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과 관련된 질의는 이따가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예, 추가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민 위원**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경찰 쪽에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잘 보이지 않네요.

혹시 지금 딥페이크 관련돼서 일종의 수사 매뉴얼 같은 걸 좀 가지고 계신가요? 수사와 관련된, 수사 접수라든지 피해자 보호라든지 이후의 처리 절차 매뉴얼 같은 게 있으신가요?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매뉴얼 말씀하십니까?

○**장철민 위원** 예.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일반적인 수사 매뉴얼은……

○**장철민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매뉴얼만 있고 이게 지금 없는 상황인 거지요?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딥페이크 관련은 알아보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딥페이크든 유사 성범죄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게 지금 있는 상황인가요?

최근에 이렇게 국가적인 현안이 되고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지 표명을 한 다음에도 사실 일선에서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국회로도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도 사실 대전의 몇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최근에 국가적인 이슈가 되다 보니까 피해자 중 한 분이 용기를 내셔서 증거를 가지고 일선 경찰에 찾아가신 거지요, 피해 접수를, 신고를 하시려고. 그런데 해당 경찰분이 자기도 뉴스는 봤는데 이게 접수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컴퓨터로 찾아보고 계셨대요. 그래서 피해자분이 답답하니까 ‘본청도 접수하는데 그러면 거기로 가야 되냐?’라고 했더니 ‘저보다 잘 아시네요. 거기로 가 보시라’ 이렇게 안내했다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고요. 그래서 사건 접수 못 하고 결국 돌아왔답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들었는데 이것도 지난주 일입니다. 피해자분께서 본인의 이런 피해사진 같은 게 아까도 보고받았던 겹지인방에서 유포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방문을 하셨어요, 신고를 하시려고. 그랬더니 그 증거를, 그 전달 경로에 대해서 직접 가져오라고 요구를 받았고, 그러면 본인 핸드폰 포렌식을 해 줄 수 있느냐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사이버 범죄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기에 직접 증거를 찾아야 한다며 또 접수를 해 주지 않았대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경찰이 무슨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직접 증거를 요구한 이것도 사실 이해는 잘 안 되는데 피해자한테 다시 그 피해 사진을 요구하고 본인 몸이 맞냐 뭐 이런 등등의 질문들을 해서 또 수치심을 엄청 느끼시고 이런 일들이 지금, 당장 지난주 상황이에요, 지난주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경찰이 정말로 이 관련된 수사에 대한 의지 표명은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알고는 계시는 건가? 지금 일선에서 이걸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냥 대혼란에만 빠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훨씬 더 큰 어떻게 보면 2차 가해를 지금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된 매뉴얼이 됐든 지금 일선에서 어떤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딱 표정이.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철민 위원 예.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매뉴얼은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지금은 성범죄 관련된 사건들은 시·도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온라인상의 성범죄 관련은 시·도청에서 하도록 지시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 단위에서 접수된 사건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희에게 지시가 된 부분은 경찰서 단위에서는 일단 피해자 조사만 하고 사건을 시·도청으로 이첩을 하도록 지금……

○장철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일선에서 그것조차도 인지되고 그렇게 실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제보가 지금 국회로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저희가 한번 정확하게……

○장철민 위원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하나 더 하자면……

○장철민 위원 하나 더는 제가 1분밖에 안 남아 가지고……

지금 텔레그램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피해자가 꼭 신고해야 되는 시스템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혹시 프랑스에서……

이 얘기부터 먼저 드려야겠네요. 텔레그램에 1년에 몇 건 정도 요청하셨었습니까, 수사 협조를?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그 부분은 통계를 한번……

○장철민 위원 1년에 한 20건쯤 하셨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를 들면 구글이든 메타든 다른 데 1년에 경찰에서 협조 요청한 게 거의 1만 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90% 이상 사실은 받으시더라고요. 왜 텔레그램에는 안 하셨습니까?

이게 안 되더라도 끊임없이 사실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신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정말 지울 수가 없어요. 다른 큰 IT 기업들도 1년에 거의 1만 건 정도 협조를 해 왔었는데 이건 사실은 경찰청의 의지가 부족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 하나하고요.

제가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이후에 추가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예, 위원님 추가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 한상형 과장님, 지난 n번방과 박사방 등 디지털성범죄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난 해를 기억하십니까?

○법무부형사법제과장 한상형 예.

○김선민 위원 2020년입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사회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당시 정부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변화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대표적으로 2021년 법무부는 디지털성범죄 대응 TF를 만들어서 이 성범죄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22년 5월에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전문위원회 활동과 성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했습니다. 보셨습니까? 내용 아십니까?

○법무부형사법제과장 한상형 그 조치가 있었고 권고안이 11회 있었고 그런 사항들, 기본적인 사항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선민 위원 그렇지만 이 TF는 2022년 6월 해산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 달 만이었습니다. 법무부는 TF 해산의 이유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장님, 소기의 목적 달성하셨습니까?

○법무부형사법제과장 한상형 11개의 권고안이 있었고 그중 10건에 대해서는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했는데……

○김선민 위원 달성을 했으면 이 성과는 결과로 남아야 합니다.

○법무부형사법제과장 한상형 그렇습니다.

○김선민 위원 다시 이런 범죄가 나타났고 이 범죄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달성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TF 교육홍보소위원회에서 준비 중이던 미발표 권고안 가운데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의 문제점과 현황을 진단하고 청소년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법률기술소위원회에서는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교정교육 개선 방안 그리고 딥페이크 기술 악용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유럽평의회의 사이버범죄협약에도 가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딥페이크 범죄 TF가 제 기능을 하고 이후에 업무 성과를 토대로 해서 관련 부처가 제대로 일을 했더라면 과연 오늘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지 의문입니다. 당시 TF

팀장이었던 서지현 전 검사는 이미 그 당시 신종 범죄 수법에 대응하는 신속한 법률 제정은 한시도 미뤄서는 안 되는 너무나 절박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비단 서지현 팀장과 당시 TF 구성원만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바뀌고 조직이 사라지면서 2년이란 세월을 허송세월했습니다.

앞으로 이 전문위원회의 성과를 상세하게 들여다보고 그 후속조치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심위에서 나오신 이동수 국장님, 오늘 하신 말씀이 텔레그램 측에서 메일을 받으셨다고 했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 이동수 예.

○김선민 위원 정부는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 이동수 그동안 텔레그램 건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시정요구 결정이 나면……

○김선민 위원 어떻게 의사를 전달하셨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 이동수 문제의 정보들을 텔레그램 계정으로 다 보냈었습니다.

○김선민 위원 그러니까 계정으로 보내신 거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 이동수 예.

○김선민 위원 경찰청에서 오신 수사국장님, 피의사실이 의심되면 이메일로 보내십니까? 아니지요? 직접 찾아가시지요?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텔레그램에 말씀입니까?

○김선민 위원 아니 어디든, 일반적으로 범죄 사실이 의심되면 직접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메일을 받으셨다고 했지만 이게 우리 정부의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8월 24일 프랑스에서 텔레그램의 CEO인 파벨 두로프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28일에는 74억이라는 보석금을 내고서야 보석이 허가됐습니다. 그 이후에 텔레그램이 우리 정부에 반응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과연 그동안 텔레그램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성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저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에서 앞서가서 우리가 어부지리의 성과를 이루었는지, 그리고 모든 기관 간의 대화가 이메일에 의존한다라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는 저희 의원실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선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예.

○위원장 이인선 다음은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법무부의 한 과장님, 오늘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현안질의에 나오시겠다고 혹시 자발적으로 손 드셨습니까?

○법무부형사법제과장 한상형 예, 그렇습니다.

○전진숙 위원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국장과 차관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고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 가능하신 거지요?

○**법무부형사법제과장 한상형** 완전히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위원님 소중한 말씀 주시면 잘 답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다른 부처에서는 책임 있는 자리에서 최소한 국장, 정책관 정도 직위에 계신 분들이 오셨는데 법무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한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여가위 전체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법무부에 요청한 자료 6건 중 단 1건도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법무부의 허용의 답변이 얼마나 높은지를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에 다시 제출할 테니까 반드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형사법제과장 한상형** 예,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존경하는 김선민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 관련해서 죽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9년에 n번방 사건 이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무부에서 대응 TF팀을 꾸렸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22년 5월 16일 날 서지현 검사에게 원대 복귀 통보를 했습니다. 그때는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 5월 17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임명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6월에 임기와 상관없이 TF를 공식 해산했지요? 맞습니까?

○**법무부형사법제과장 한상형** 제 업무는 아닙니다만 당시 해산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진숙 위원** 오늘 과장님의 다 책임지고 오셨는데 이 정도는 최소한 파악은 하고 오셨어야지요.

○**법무부형사법제과장 한상형** 당시에 전문위원님들하고 자문위원들이……

○**전진숙 위원** 됐습니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총 열한 차례의 권고안을, 10개월에 걸쳐서 60여 개의 법률 개정안을 담은 권고안 11개를 발표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무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TF가 해산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11개 권고안 중에 이미 임기 만료 폐기된 법안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법무부형사법제과장 한상형** 지금……

○**전진숙 위원** 그러면 11개 중에 21대 의원들이 법안으로 발의하지 않고 그냥 권고안 그 자체로 남아 있는 것은 몇 개 정도 됩니까?

○**법무부형사법제과장 한상형** 22개 법안이 발의됐고 권고안만 있었던 게 1건인데 22대 국회에서 다행히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권고안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 파악 중이십니까?

○**법무부형사법제과장 한상형** 법무부의 정책기획단에서 관련된 후속조치들을 총괄을 하고 있고 저희가 기존에는 임시 TF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법무부의 모든 실·국·본부가 각자 소관 업무에 따라서, 저희 형사법제과를 포함해서 계속 입법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진숙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저에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실제로 방금 김선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 범죄 관련해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여전히 우리들의 숙제로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관계부처 대응 지도라는 것을 그려서 지금 새롭게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 당시에 왜 해산을 하는지, 여기서 나온 권고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실행 방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답변도 없이 해산을 실제로 시켰습니다. 그러니 디지털성범죄가 그 이후에도 가수 정준영의 불법촬영물 공유 사건, 웰컴 투 비디오 사건으로 계속 이어졌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호들갑을 떨면서 서울대 n번방, 지인방, 가족방, 군수품방 등 다양해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결국은 저는 이것은 법무부가 대국민 먹튀 행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 사회가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로, 실은 n번방 사건이 나면서 몰아왔던 거고 국가가 어느 정도 대응을 해 줄 거라고 우리는 기대했지만 그 기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살그머니 어느 날 사라져 버린 TF를 저희들은 목격을 했습니다. 이것은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먹튀 행정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TF가 권고한 이행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저에게 구체적인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근 위원님의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그러면 김한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위원 이동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장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 이동수 예.

○김한규 위원 2020년에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됐는데 현재 방심위가 카카오나 네이버, 주요 SNS,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영상물이나 게시물의 내용을 전부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 이동수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내용을 모니터링을 합니까? 특정 영상, 불법 영상이 돌아다니는 것 말고 이용자들이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 이동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제가 어떤 영상을 불법 영상이 아니고 제 가족한테 보냈다, 그러면 방심위가 제가 그런 영상을 가족한테 보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 이동수 알 수 없습니다.

○김한규 위원 혹시 n번방 방지법 시행되고 나서 혼란이나 반발 이게 심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까? 초기 법 만들 때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혹시 실제 시행했더니 너무 과도한 규제だ라고 해서 혼란이나 반발이 있거나 뭐 그렇지는 않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 이동수 제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그런 부분은 크지는 않았습니다.

○김한규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못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2021년에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가 올렸던 SNS 게시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이렇게 보시면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이라고 ‘검열’이란 표현이 나오고 위에도 보면 n번방 시행으로 혼란과 반발이 거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지금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잘못된 주장을 하셨다고 보는데, 저는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다시 나오니까 동일한 이런 검열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모 국회의원님이 방송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카톡과 커뮤니티 사이트에 전수조사 검열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런 검열 진행 중입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 이동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한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열이……

○**김한규 위원** 그러면 사실과 다른 얘기인데, 이런 정치인의 발언이나 관련 보도가 많이 됐는데 적극적으로 반박 안 하시네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열하고 있다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것은 국민들의 인식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실제로 국민들이 n번방 방지법으로 우리 SNS가 검열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딥페이크 이슈로 검열이 더 강화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라면 방심위가 적극적으로 그런 걸 바로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검열하고는 다른 거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 이동수** 검열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렇지요? 성범죄 영상물을 기술적으로 동일성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검색해서 찾아내는 거지 저희가 내용을 리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범죄를 모의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 이동수** 예, 맞습니다.

○**김한규 위원** 차관님, 이렇게 검열에 대한 주장도 나오고 또 한편에서는 딥페이크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 그런데 일각에서 이런 것을 과대포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차관님,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기술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규제를 우려하시는 목소리가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아니, 지금 딥페이크 문제가 과대평가됐다라고 하는데, 과장돼 있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과장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다 모여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딥페이크가 잘못 사용되고 모두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할 수 없다면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면 실제 사례를 보고 있는 신보라 여성인권진흥원장님, 피해자 지원하는 업무 담당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정치권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과대평가해서 이렇게 잘못된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신보라**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한규 위원** 분명히 상당한 피해가 있고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맞지요?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신보라** 예, 그렇습니다.

○ **김한규 위원** 차관님, 오늘 되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 가지고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정책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국회의원들께서도 다 입법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통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일들은 국민들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검열당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피해가 중요하지 않은데 과대평가되고 있다,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사건이 활용돼서는 안 되는데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막는 데 여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 **김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근 위원**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일단 과기부 엄열 정보통신정책관님하고 방통위의 이동수 심의국장님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기술을 이용해서 딥페이크 이미지나 영상을 만드는 경우에 해당 이미지 또는 영상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이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들, 소위 워터마크라는 것들을 기술적으로 집어넣는 것들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지요? 엄열 정보관님, 어찌세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관 엄열** 예, 그렇습니다.

○ **김남근 위원** 충분히 가능하지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관 엄열** 충분히 가능합니다.

○ **김남근 위원** 그 플랫폼 기업들에게 AI 기술을 이용해서 딥페이크를 만드는 걸 할 때 거기다가 워터마크 표시를하도록 하는 그런 기술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한 거지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관 엄열** 예, 온라인상의 생성물에 대해서 이것이 AI를 활용해서 되어 있는 페이크몰이라는 것을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런 표시가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 **김남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규범적으로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게 AI 기본법에 집어넣든 정보통신망법에 넣든 딥페이크 이것은 AI 그런 인공 기술을 이용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 낸 이미지나 영상이다라는 것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건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관 엄열** 예, EU를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어떤 법에 넣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각국에 따라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남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들에 대해서는 딥페이크인데도 불구하고 워터마크 표시가 안 돼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플랫폼들이 얼마든지 검색을 해 가지고 그걸 걸러 내고 그것에 대해서는 삭제하도록 하는 이런 기술도 충분히 가능한 것아지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관 엄열 위원님, 사업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 김남근 위원 아니, 일단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플랫폼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관 엄열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 김남근 위원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관 엄열 예, 그렇습니다.

○ 김남근 위원 그런데 문제는 플랫폼들이 스스로 안 해. 그렇지요? 충분히 가능한데도 그러니까 지금 성착취물 문제도 이거 한참 유통이 되다가 나중에 여가부에 있는 여성인권진흥원이 발견을 해 가지고 그거 삭제해 달라 그러면 이미 6개월, 1년 지난 거예요.

피해자들은 엄청나게 피해 입은 상태에서 이거 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플랫폼들 스스로, 다 하기 어려우면 일정 규모 이상의 그런 플랫폼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워터마크 표시를 하지 않은 딥페이크에 대해서는 스스로 검색을 해서 걸러 내 가지고 그걸 삭제하도록 이렇게 규범화하는 게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 아닙니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관 엄열 위원님, 기술적 관련된 부분 중에……

○ 김남근 위원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그걸 규범적으로 할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논의의 대상이다 아마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연방 차원에서 하고 있는 AI 행정명령을 보게 되면 AI 이용과 관련해 가지고 워터마크 표시들을 하도록 하고 이런 워터마크 표시를 하지 않는 딥페이크에 대해서는 검출을 하도록 하는 지침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알고 계시지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관 엄열 예, 그렇습니다.

○ 김남근 위원 그리고 EU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AI 기본법 같은 걸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딥페이크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것들을 플랫폼 스스로 걸러 내고 검색하도록 하는 그런 규범들이 들어가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관 엄열 예, EU하고 유럽, 미국하고 조금 다른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맞습니다.

○ 김남근 위원 그건 어떻게 보면 약간 보편적인 거잖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관 엄열 예.

○ 김남근 위원 충분히 기술적으로도 가능하고 이미 세계 보편적으로 규범화 시도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일정 규모의 플랫폼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검색해 가지고 워터마크 표시하지 않은 것들은 걸러 내 가지고 삭제하도록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에요.

또 그 과정 속에서 성착취물과 같이 불법적인 영상물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피해자를 구제해 주는 여가부나 이런 데다가 통보하도록 하는 것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이제 규범화하는 것이 문제인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관 엄열 규범과 제도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남근 위원 그런데 결국은 과기부나 방통위가 AI 촉진법들은 그렇게 열심히 촉진, 촉진, 촉진해 나가면서 그게 빠르게 촉진돼 나갔을 때 이런 딥페이크 피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들,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들이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도 AI가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사회적 해악, 부작용들에 대해서 민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그런 입법이나 규범화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큰 사태가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과기부나 방통위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해도 좋고 AI법, AI 기본법에 넣어도 되는데 이런 딥페이크 문제에 대해서는 워터마크 표시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의 플랫폼들에 대해서는 그걸 스스로 검색해 가지고 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이런 불법영상물 같은 것들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이런 식의 규범체계를 만드는 건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관 엄열 위원님, 지금 AI법 발의된 법안 보시면 진홍과 규제들이 균형 있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 김남근 위원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입법의 필요성도 지금 이해하고 계시는 거지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관 엄열 그렇습니다.

○ 김남근 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관 엄열 지난 국회 때도 사실 굉장히 시도가 있었고요. 안타깝게……

○ 김남근 위원 저도 법안을 봤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부분 다 촉진법의 내용만 있었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관 엄열 위원님, 촉진과……

○ 김남근 위원 그런 것들을 민주적으로 관리를 해서 딥페이크 피해 같은 것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막기 위한 그런 규범적 시도를 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때 과기부하고 방통위가 협력하여 가지고 AI 기본법에 딥페이크 방지할 수 있는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 그다음에 그걸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검색해서 삭제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불법영상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이나 여가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꼭 입법하는 시도들을 정부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관 엄열 예, 진홍과 안전한 AI가 될 수 있는 법안이 되도록, 균형 있는 법안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김남근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선 김남근 위원님 중요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21대 때 AI 기본, 진홍, 윤리 이런 법안들이 사실 통과를 못 하면서, 못 한 이유는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조금 미루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22대에는 빠른 시간 내에 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상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욱 위원 반갑습니다. 울산 남구갑 김상욱입니다.

먼저 이번 이 일 때문에 사실 지금 많은 위원님들 나와 계시고 또 정부의 많은 분들 나와 계시는데 아마 다 같이 느끼는 부분일 겁니다. 많이 당혹스럽고 또 많이 분개하고 또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모두 다 공감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잘잘못을 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신 유관 부처장님들께 꼭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논란을 여기서 해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정말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라는 다짐을 국민들 앞에서 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랍니다. 이번 일 보면서 정말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AI 시대에 한 부처만으로는 이게 대응이 되지 않는다, 서로 간의 협조가 정말 중요하다. 아마 다들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우선 여성가족부 신영숙 차관님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많이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 여성가족부였습니다. 왜냐하면 여성가족부에 늘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기능이 아니라 대상 중심 기관이다 보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말씀하시는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젠다를 먼저 발굴하고 유관 부처를 설득하고 만들어 가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기획을 해 나가야 합니다. 가치를 추구하는 기획을 여성가족부에서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AI가 발전함으로 인해서 여성들이—또는 경우에 따라 남성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이런 성착취물 또는 딥페이크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여성가족부는 가치를 추구하는 곳이니까 먼저 연구해서 유관기관들에게 적극적으로 함께 하도록 권하고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깊이 생각을 하겠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초부터 사실은 저희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깊은 우려를 가지고 나름대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관련 부분들을 협의를 해 가면서 실무협의체를 운영했습니다만 느끼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위원** 또 여성가족부에서 해바라기센터 운영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김상욱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해바라기센터가 어떻게 보면 여성가족부가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 모범적인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예방과 수사까지 다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데 이번 딥페이크 사태와 관련해서는 지금 좀 혼란스럽습니다. 해바라기센터에도 기능이 있고 또 다른 센터도 기능이 있고 나눠져 있는데요 좀 효율적으로 정비를 하고 관리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빨리 찾아갈 수 있는 곳을 홍보를 해야 되고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 하는데 이미 활용되고 있는 해바라기센터와의 기능 통합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이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정신적·심리적 치료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단순히 이것을 전산적으로만 해결할 부분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받는 심리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기존에 있는 해바라기센터나 이런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부 나와 계시지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관 엄열 예.

○ 김상욱 위원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텔레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못 쓰게 막을 수 있지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관 엄열 못 쓰게……

○ 김상욱 위원 아예 서비스를 못 하게 막을 수 있습니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관 엄열 그것은 그럴 수는 없습니다.

○ 김상욱 위원 그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관 엄열 불가능하다기보다는 그렇게……

○ 김상욱 위원 법 근거가 없어서 못 하는 거지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관 엄열 예.

○ 김상욱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처에서 보다 적극적인 연구를 해서 법안 발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사 협조가 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해외 기반 플랫폼 서비스는 국내에서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막는 본질적인 대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계속 협조를 구걸하는 게 돼 버리지 않습니까. 협조 구걸이 아니라 협조를 안 하면 한국에서 너희 사업 못 한다라고 막을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기술적 연구와 법안 연구, 법제 연구를 해서 우리 국회와 함께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런 준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관 엄열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상욱 위원 그리고 법무부차관님 나와 계시지요?

○ 법무부형사법제과장 한상형 죄송합니다. 형사법제과장이 대참했습니다.

○ 김상욱 위원 사실 이런 성범죄 관련해서 점점 고도화되고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시간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선 예, 추가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차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2차 질의시간은 안내드린 것처럼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3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남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희 위원 법무부 한상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언론 보도에 따르면 n번방 성착취물 소지자 74%가 집행유예를 받아서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현실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없애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n번방 조주빈 은닉 범죄수익이 1억 800만 원인데 실제 검찰이 몰수·추징한 금액이 7만 원이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이처럼 범죄자 처벌, 수익 몰수·추징까지 제대로 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때문에 디지털성범죄가 더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딥페이크 범죄도 마찬가지고요.

딥페이크 범죄가 어떻게 판결이 났는지 지금 확인을 해 봤더니 놀랄 만한 결과를 확인

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딥페이크 처벌법이 도입된 이후에 기소된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해 봤는데요. 최근 4년간 딥페이크 범죄로 87건의 판결이 선고됐는데요 이 중에 40%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고 별금형도 16%입니다. 화면 보시면 자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받은 판결문을 분석해 보니까 제작·유포 행위가 있었는데도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다운받은 피해자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합성해 붙이고 이름, 핸드폰, 주소, 학교를 포함한 정보와 함께 성폭력당했다는 허위 정보를 유출했는데도 집행유예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연예인 딥페이크 영상 판매하겠다는 게시글 올리고요. 합성물 여섯 번에 걸쳐서 판매했는데 그것도 집행유예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성 행위하는 장면 합성하고 허위영상물 복제해서 16회에 걸쳐 SNS에 올린 것도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도 가해자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감형을 하고 집행유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디지털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딥페이크 범죄가 심각한 범죄다 그리고 제작뿐만 아니라 소지·시청까지 범죄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법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하셨는데요 추진되기 이전에도 현재 양형기준 정비하고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 당국에서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법무부형사법제과장 한상형** 예, 맞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불법촬영물 범죄는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저희가 법 개정 전이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유념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리고 몰수 추징 환수 제대로 집행되는지 점검하시겠습니까?

○**법무부형사법제과장 한상형** 예, 그리고 몰수 추징 의무화하는 법안도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입법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아 위원** 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 2000명 증가했고 딥페이크 피해도 2.4배 늘어났고요. 올해도 반 년 만에 피해자가 7425명에 달하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여가부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 지원 강화를 위한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조직·인력 기반 필요하다 이렇게 구체적인 대책까지 제안을 하셨어요. 그런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업무 담당하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예산이 22년 148억 원에서 23년 142억 원으로 6억 원 감소했고 아동·여성 폭력 방지 및 현장 지원 사업도 3억 원 이상 줄었습니다.

저는 2022년 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그 영향으로 예산 감소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이 디지털성범죄 피해 확산의 심각성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관련 예산 확보하지 않고 오히려 삭감한 윤석열 여가부에 그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말씀하신 부분은 이 기능에 소홀해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요. 작년도에 28억이 감소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이나 유사·중복 등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심의……

○**백승아 위원**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예산을 더 확충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그것은 유념하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경찰청 수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원실에서 교사 피해 사례를 조사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결과만, 경찰의 대응만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경찰은 접수 후 IP 추적 위한 압수수색 의미 없었다며 수사 종결한다고 했고 대응도 연락도 없었다, 경찰 신고했으나 사소하게 생각한다는 느낌 받았고 딥페이크 이슈화된 지금 갑자기 수사 재개한다는 전달받아 당황스러웠다, 경찰에 신고했으나 수사에 소극적이었다, 네이버에 수사 협조 의뢰했다 하고 3개월 동안 기다리다가 직접 문의했더니 피의자가 네이버 탈퇴해서 잡을 수 없다고 알려 줬다.

경찰청 수사국장님, 피해자나 신고자들에게 경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피해자들은 피해 입은 사실도 괴로운데 신고와 수사 결과 기다리면서 두 번, 세 번 상처받아야 합니까?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적극적으로 수사하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지금 경찰청 보고자료 보면 전국 시·도청 25개 팀 127명밖에 인력이 없습니다. 19년도에 21개 팀 99명에서 24년 현재 25개 팀 127명으로 겨우 28명이 증가했는데요 디지털성범죄 발생 건수는 19년도 9043건에서 지난해 2만 127건으로 급증을 했어요. 이 정도 수사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담 수사팀 확충, 수사인력 보강 계획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전담 수사팀 확충하는 부분은 접수되는 사건의 규모를 보고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승아 위원** 규모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인력 확충하셔야 됩니다.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지금 사이버수사대 중의 일부를 성폭력 전담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필요하면 사이버수사대 인원 중의 일부를 추가 투입하는 방안과…… 지금 경찰서 단위에 여청과, 성폭력 담당하는 수사팀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경미한 사건, 그러니까 쉽게 피의자가 특정된 사건은 거기다 맡기고 특정하기 어려운, 추적에 고도의 수법이 필요한 부분은 각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전담팀으로 옮기는 그런 투 트랙 전략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백승아 위원** 지금 그 수사팀이 수사한 내용 알려 드렸잖아요, 부실 수사하고 피의자 잡을 수 없다 하고, 저는 인력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정성 부족인가요?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 정도 의지로는 부족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에 당부드립니다.

앞에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학교라는 특성상 피해자는 사진과 영상을 본 학생들과,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고 일해야 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상당한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치유 지원 방안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고요. 더욱 강화된 보호 방안,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부정책기획관 배동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백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한지아 위원** 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를 포함해서 예방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을 나이에 따라 더 정교하게 해야 됩니다. 또 범죄에 대한 대응을 나이에 따라 더 적절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피해자 보호도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축은 재범 방지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한상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딥페이크 같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형사법제과장 한상형** 이게 상당히 범인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그런데 그 결과물 자체는 실제 사람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피해는 상당히 중한 데 비해서 피해자는 그런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지아 위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손쉽게 만들어질 수가 있고 유통이 될 수 있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무부형사법제과장 한상형** 그렇습니다.

○**한지아 위원** 그만큼 재범 방지가…… 생각보다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법무부 차원에서 고려하고 있는 재범 방지에 대한 방안들이 혹시 있나 여쭤봅니다.

○**법무부형사법제과장 한상형** 저희가 재범도 재범입니다마는 이런 범죄가 급증하는 것, 특히 배울 만큼 배운 대학생들까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끼리 이런 범행을 하면 아무도 모르겠지 약간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소지, 시청, 구입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도입을 하고 딥페이크물에 대해서 일반 불법촬영물하고 같이 법정형을 맞춤으로써 진입장벽, 그러니까 범죄에 들어서는 문턱 자체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지아 위원** 그것은 아마 예방, 방지라고 생각하는데 재범에도 중요한 사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를 한번 살펴봤더니 미국 연방법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특별조건으로 컴퓨터 사용 제한이나 인터넷 사용 제한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방법원뿐만 아니라 각 주의 법원에서도 컴퓨터 사용을 제한 혹은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성범죄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준수사항에 디지털성범죄와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법무부의 견해

는 어떤 십니까?

○법무부형사법제과장 한상형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종류의 보안처분들이 들어오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 제도로 스토킹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붙이는 게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방안들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들을 준비하고 실효적으로 재범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아 위원 고맙습니다. 재범 방지에 꼭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상담번호에 대해서 차관님께 여쭤봅니다.

최근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디지털성범죄 신속 초기 대응에 대해서 디지털성범죄 신고번호를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366으로 통합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통합하기로 결정했으니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여성긴급전화 1366의 명칭 변경도 저번에 업무보고 때 부탁드렸던 것처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검토를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세심하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 4분의 1이 남성이거든요. 이 부분들을 고려해서 추진 상황을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저는 딥페이크 대책은 상시 모니터 그리고 범죄물에 대한 삭제 그리고 수사, 피해자 지원 그리고 예방교육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대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이것을 일관되게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주무부처가 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여서 회의 한 번 한다고 대책이 나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까도 계속 지적했지만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큰 딥페이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여성가족부장관 빨리 임명하실 것을 대통령께 건의하시고 또 6개월 째 공석 중인 권익증진국장 빨리 임명하시라고 대통령께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딥페이크 범죄가 가해자나 피해자나 주로 10대에 많이 몰려 있는데 이들에 대한 교육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TF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이런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 이후로 10대 학생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하면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붙잡힐 염려가 없었기 때문에 한 68% 그리고 자랑, 관심 받고 싶어서 59.9%, 별게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한 59.5%, 돈 욕심 때문에 한 5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을 하게끔 법률에는 규정돼 있는데 실제 집행은 굉장히 미흡합니다.

교육부 관계자 나와 계시지요?

○교육부정책기획관 배동인 예, 교육부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연희 위원 지금 법률상으로는 학생들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최소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이 규정을 매년 2, 3회 이상 아니면 4시간 이상의 교육으로 바꿔야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성인권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정책기획관 배동인 현재 양성평등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1년간 초중고……

○**이연희 위원** 동의하셨는데 짧게만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시간이 있어서.

○**교육부정책기획관 배동인** 15시간 이내에서 하고 있는데 디지털 윤리나 디지털 시민성이라든가 미디어 리터러시 이런 쪽으로 강화해서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PPT를 하나 올려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면)

그러면 예산도 매우 중요한데 지금 참 아쉽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여가부의 디지털 성범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방교육 콘텐츠 이런 것 관련한 예산들이 폐지되거나砍감되고 있어요.

PPT 보시면 6번·7번 사업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교육 그다음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컨텐츠 제작 이런 예산들이 24년도에 폐지가 됐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정부가 디지털 대책 세우고 교육한다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차관님,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 교육 콘텐츠 제작이 폐지된 부분은 기존의 교육자료에 대한 활용 등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어서 이 부분들에 대한砍감이 진행되었고요.

그다음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은 각 집행기관들의 실집행률이라든가 부정수급이 발생된 이슈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연희 위원** 차관님, 여기 국회잖아요. 저희들은 여성가족부가 디지털 범죄 대책과 관련해서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다하기를 바라고 있고 그것을 저희들이 지원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들이砍감됐으면砍감됐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복원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국회에 지원을 요청하는 게 맞지 그걸 변명이라고 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말씀하신 부분 검토해서 필요하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이동수 방심위 디지털성범죄 심의국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PPT 화면 좀 봐 주십시오.

제가 텔레그램 사업자가 메일을 확인할 때도 있고 확인 안 할 때도 있고 그러면 답변 안 해 줄 때 어떻게 하냐 이 질문을 하다가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방심위 텔레그램 디지털성범죄 정보 조치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방심위 모니터링에 잡힌 텔레그램의 디지털성범죄 정보가 412건입니다. 그런데 텔레그램 측은 이 중에 58건, 14%에 대해서만 방심위 심의 전에 삭제조치를 취했습니다.

작년에는 모니터링된 성범죄 정보 중 단 1.2%만 삭제조치를 했습니다.

방심위 절차를 보면 모니터링 후 24시간 내에 자율규제 요청, 자체 삭제입니다. 그래서 안 되면 방심위 심의, 삭제 안 했을 시 시정요구, 그러니까 접속경로를 차단한다 이런 건데요.

제 말씀은 이 정도로 삭제조치 비율이 낮은데 이제 핫라인을 구축해서 저쪽에서 받았다고 확인해 주고 하는데 확인해 줄 때는 좋지만 안 해 줄 때는 어떻게 하냐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3년 동안 보면 이렇게 확인해 주는 비율이 낮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 이동수** 지금 텔레그램하고 소통창구가 개설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 전에는 텔레그램에 대해서 삭제 요청을 하면 한참 있다 삭제가 되곤 했는데 앞으로는 24시간 이내에 삭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조은희 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충분히 전달드렸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가입할 부다페스트(사이버범죄)협약이나 또 방심위가 참여하는 글로벌 온라인 안전 규제기관 네트워크 이런 것을 잘 활용하시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PPT 화면 두 번째를 보시면 특히 부다페스트협약은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가입 추진했다는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상형 법무부 과장님, 가입에 필요한 국회 입법 마련 언제쯤이면 되겠습니까?

○**법무부형사법제과장 한상형** 지금 관계부처가 4월부터 계속 열심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법안을 올려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10초가 좀 더 필요한데.....

○**위원장 이인선** 예, 하세요.

○**조은희 위원** PPT 화면 세 번째 것 좀 해 주십시오.

디성센터에 따르면 디성센터가 삭제 지원한..... 불법촬영물 사이트의 95.4%가 해외에서 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사업자가 적을 두고 있는 국가가 어떤 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이를 방조하는 것이 왜 불법인지 불법성을 증명할 논리와 근거를 갖춰 가지고 전 관련 기관이 협조를 해야 그 요구에 힘이 실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기관의 협조를 갖추는 게 중요하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가부가 왜 힘을 안 쓰나 그랬지만 전 기관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조실에서 힘을 갖고 전 기관에서 협조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여가부차관님, 이연희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저런 예산이 자꾸 흔들리는군요.

차관님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더 많이 확보하려고 준비하세요. 그래서 더 많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과거 법사위에 있을 때 보면 박근혜정부 시절인데 여가부장관이 가지고 오는 법은 박근혜정부 쪽 위원들이 통과를 안 시켜요, 큰소리치고 야단치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여가위의 이런 예산은 여야 없이 우리 위원님들 지금하시는 것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조은희 위원님 말씀처럼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져야지 돼요. 여러분이 오늘 만난 걸 계기로 전체 하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왜 갑자기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이 이렇게 확 올라왔나 그것은 여기의 누구도 신경을 잘 안 쓰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이에 독버섯처럼 이렇게 확 늘어나게 된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딥페이크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찾아다녀야 돼요. 영상에 보듯이 여가부가 최근 일주일간 접수를 받았는데 726건 피해 접수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대학생이 트위터로 2000개가 넘는 피해사실을 제보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보를 좀 더 넓게 열어서 받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피해 접수는 주로 여가부 어디에서 받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한국인터넷진흥원 내에 있는 디지털피해방지대책센터에서 받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 피해 접수를 받는데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찾아다녀야 되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지 되는데 어떻든 지금은 피해자와 우리가 모두 다 합쳐서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 거겠지요. 국가수사본부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피해자들은 저와 관련한 이것을 누가 했는지 가지고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사의뢰를 하는 것이 꽤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잘 찾아내고 처벌해 주길 바랍니다.

‘학교폭력 딥페이크 대책본부’라고 하는 것이 네이버에 떠 있다고 하는데 저게 무슨 카페입니까? 박성혜 센터장님, 보셨어요? 저것 보신 분 있으세요?

가해자들의 카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름은 우리가 만든 이름 같은데 저기에 ‘우리 아들 어떡하면 좋지요?’라고 올라오고 가입자 수가 2만이 넘었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이것 언론에 나온 건데.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셔서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지……

그런데 어떤 가해자가 ‘아무도 우리 못 잡아’ 이런 얘기가 저기 있어요. ‘텔레그램 가입자가 9억 명인데 저걸 잡겠다고? 몇 명 잡다 말 거야. 걱정 마’ 이런 식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글들이 쓰여 있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누가 움직여 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띄워 주세요, 마지막 거.

교육부에서, 아까 백승아 위원님 올린 건데 딥페이크 관련 텔레그램 사용 유무 설문

조사 이것 관련해서 이름, 전화번호 기재하라고 이렇게 딱 올려놨다는 거예요. 내 이름 써 놓고 선전할 일 있어요?

이제 저희 국회의원들이 더 애를 써야지요. 여러분이 더 애를 써 주셔야 돼요. 그래서 칭찬받으면 좋겠고 그래서 한국에는 이렇게 독버섯처럼 나가는 일이 없게끔 우리가 지켜줄게 하는 걸 이번 기회에 했으면 좋겠어요.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면서 필요한 예산, 필요한 기구…… 이번에 검찰에서 예산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다 같이 할게요. 그런데 대신 근거와 이런 내용을 갖고 오시고, 오늘 박성혜 센터장님은 그 현장의 사례를 저희 방에 좀 전달해 주십시오.

○**한국여성인권진흥원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장 박성혜** (고개를 끄덕임)

○**서영교 위원** 신보라 진흥원 원장님과 같이 오셔서 전달해 주시면 아무 데서도 못 들은 얘기를 좀 듣고 저희가 대책을 더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부처 담당자들의 답변을 들으면서 약간 가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워터마크에 대한 기술적인 능력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AI법이 통과가 되면 그것이 AI 생성물에 대해서 부착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게 자동적으로 부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선택적으로 부착을 해야 하는 건가요? 과기정통부에서 오신 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관 엄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으로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게 디폴트로 당연히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임미애 위원**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관 엄열**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그게 명시적으로 보이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안 보일 수도 있고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그것은 알겠는데 이것이 AI에 의한 생성물입니다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부착되는 건 아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관 엄열**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자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비용이 투입되는……

○**임미애 위원** 저는 거기서 궁금한 거예요. 워터마크를 붙인 생성물에 대해서는 통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터마크를 붙이지 않은 생성물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저는 사실 오늘 논의의 쟁점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면 좀 주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관 엄열** 위원님, 지금……

○**임미애 위원** 이거야말로 불법적인 소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영상을 아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관 엄열** 예, 그렇습니다.

워터마크 표시제는 사실 이것이 AI를 사용한 생성물이라는 것을 표시함으로써 기존에

있던 법제도와 관련된 것들 또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저작권 문제라든지 개인정보 문제라든지 또 이런 피해자에 대해서 이게 AI 생성물이라고 하면 조금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기술적으로는 다 완비가 돼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그것을 해야 되는 거고요. 법적으로 규제를 한다면 워터마크를 해야 되는 사업자를 어떤 범위로 해야 될지는 저희들이……

○임미애 위원 잠깐만요.

이게 부착이 되었건 부착이 안 되었…… 만약에 부착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착취물일 경우에, 수위가 조금 낮다 하더라도 그런 영상물일 경우에 결국은 대형 플랫폼에서 이것이 어떻게 유통되고 플랫폼은 어떤 책임을 가지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미 해외에서는 플랫폼에 대해서 강력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위반할 경우에 엄격한 처벌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법 같은 경우에는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으면 연간 매출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그런 법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법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관 엄열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생성물에 대한 규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규제 측면의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어떠한 처벌이나 이런 부분을 도입할지 또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지는 정책적 문제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과기정통부의 입장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관 엄열 일단은 현재 나와 있는, 발의된 AI법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조항은 아닌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와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자율규제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워터마크를 붙인다 하더라도 그 수위에 따라서 어떤 피해가 발생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지요.

직접 가서 그 경중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관 엄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다음은 장철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시간 좀 잠깐 멈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청 국장님 이쪽으로 좀 나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질의하다 보니까……

○위원장 이인선 잘 안 보입니까?

○장철민 위원 각도가 너무 안 나와 가지고요. 제가 목이 돌아갈 뻔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딥페이크 범죄를 위축시키기 위한 핵심은, 사실 지금은 피해자들께서 불안해 하시고 고통받는 상황이잖아요. 가해자들이 불안해 해야 되거든요, 잡힐 것 같다. 경찰에 의해서, 우리 국가기관에 의해서 내 범죄행위가, 내가 이것을 즐기는 행위가 분명히 드러날 거다라고 불안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완전히 거꾸로지요. 지금 PT 자료 같은 데도 나와 있을 텐데 제가 계시판 글 같은 걸 하나 보니까 지금 불안해서 텔레방 지울까 고민하는 애들 필독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경찰들이 죽어도 너 못 찾는다. 등등등등의 이유들로, 텔방의 특성이나 등등의 이유로 죽어도 못 찾는다. 안심해라. 우리 더 열심히 즐기자’ 이런 얘기들을 막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경찰의 태도나 오늘 이 회의 중에도 저는 가해자들이 이 회의를 보면서 또 안심할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아마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 중이었던 것 같은데 군 관련 딥페이크 그 텔방 수사 못 한다고 하셨지요? 아마 그 텔방의 가해행위를 했던 모든 분들께서 국장님의 그 말씀 듣고 다 안심했을 거예요, ‘아, 경찰청 수사국장이 우리의 이 가해행위를 안심해도 된다고 확인해 줬다’. 안 그럴까요? 정말로 적극적으로 수사한다라고, 정말로 적극적으로 앞으로 단 한 명의 범죄자들까지 완전히 다 소탕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면 그런 얘기 못 하거든요.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철민 위원 제가 시간이 너무 짧아 가지고요.

한 가지 정도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법무부에서 나와 계시니까 이거는 요청사항입니다. 지금 겹지인방이나 이런 일종의 전 단계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겹지인방 수사하실 수 있으십니까?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예, 당연합니다.

○장철민 위원 겹지인방이라는 게 발견되기만 해도 수사를 개시하고 계십니까?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신고나 제보나, 우리가 갑자기……

○장철민 위원 그러니까 피해가 발생하고, 그 전에 겹지인방이 있으면 그 겹지인방을 수사하시는 거잖아요.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신고나 제보나 그런 부분이 들어와야,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지 저희가 겹지인방을 무조건 경찰……

○장철민 위원 겹지인방이라고 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겹지인방과 유사한 폐쇄적인 텔방들이 보통의 경우에, 예전에 사실 n번방도 비슷하기는 했었는데 어떤 약점이라든지 아니면 불법적인 성착취물들을 요구하면서 일종의 멤버십들을 만드는 건 아시지요?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예,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장철민 위원 지금은 안 그럽니까?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지금 예를 들어 이제……

○장철민 위원 겹지인방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n번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겹지인방이라는 건

딥페이크처럼 허위영상물 만드는 이런 유형으로 지금 겹지인방들이 나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철민 위원** 허위영상물을 만들기 위한 겹지인방도 그런 식으로 멤버십을 통제하면서 폐쇄성을 유지하거든요. 지금 국장님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대전의 사례로 말씀드린 그 방 피해자도 같은 유형이었어요. 국장님의 정확하게 좀 상황 파악을 하시고 국회에 나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는데……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건 이를 테면 그런 겹지인방이 생겼다, 어떤 일종의 멤버십, 예를 들면 ‘지인의 나체 사진 같은 것들을 내놔라. 그러면 너도 이 방에 넣어 줄게’라는 행위만으로도 저는 사실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수사 개시나 훨씬 더 적극적인 경찰의 태도 같은 것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들을 법무부하고 같이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본격적인 딥페이크 영상들을 생성하고 만들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겹지인방이든 뭐든 그런 폐쇄적인 텔방이든 어떤 SNS에 내가 한 발짝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인생 망칠 수 있겠구나라는 불안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조금씩이라도 줄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인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지요.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인선**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개인적으로 하시지요.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말씀하신 대로 허위영상물뿐만 아니고 겹지인방이든 n번방이든 이런 방들에서 유형이 한 가지로만 정해진 것은 아니고 성착취물을 제작을 하거나 영상을 요구하거나 이런 경우도 수사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많고 어떤 경우든, 성착취물이든 아니면 그 외에 성과 관련된 그런 불법 행위들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수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다 못 잡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과거의 사례들 한번 보시면 n번방이든 서울대 n번방 같은 경우에도 몇 년간에 걸쳐서 사실은 협조도 있었습니다마는 열심히 해서 검거가 됐고 그 외에도 호주에 도망갔던 엘까지도 잡아들이고, 하루아침에는 못 내지만 그동안 장기간 수사를 하면서 하나하나 성과물을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도 더 열심히 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경찰을 믿고 수사를 맡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 하나 답변 못 한 부분은, 매뉴얼이 있느냐고 하셨는데요 사이버 성폭력 수사 매뉴얼이 있습니다. 22년도에 개정한 게 있고 필요하면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 조국혁신당 김선민입니다.

차관님, 2021년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 사업을 시작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김선민 위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게 전문상담사를 통해서 심층상담,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수사 동행, 법률·의료 지원 서비스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는 전국에 14곳뿐입니다. 이곳마저 인력난·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차관님, 특화상담소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제가 그 현황 파악은 했지만 방문할 기회는 없었는데 방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

○김선민 위원 업무량이 해마다 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인력 충원을 호소해 왔습니다.

특화상담소의 활동 실적을 보면 지원 피해자가 2021년 631명에서 23년 1751명까지 늘어났고 총 지원 건수는 7927건에서 2만 4582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건수도 179건에서 5770건으로 무려 3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상담 또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등 각 지원 건수는 계속 늘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대면 심리상담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상담 실적이 매우 크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있는 특화상담소가 겨우 14곳, 그나마도 인력난·재정난에 시달리는 이 현실을 매우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성가족부가 당장 해야 할 일은 건전재정을 이유로 해서 이 적은 예산을 유지하고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이렇게 떠들썩할 만큼 문제가 터지고 나서도 주무부처가 비상한 결의를 다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차관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말씀하신 디지털 특화상담소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21년에 시작해서 말씀하신 대로 7개소에서 14개소로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은 많고요.

그다음에 상담인력에 대해서도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2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추가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피해자의 치료나 회복을 위한 활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섬세하고 깊게 업무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하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재정 당국하고 협의해서 이런 예산의 필요성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법무부와 여가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실은 제가 얼마 전에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각종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 왜 여성 스스로가 자구책을 찾아야 되는지 또 고액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디지털

장의사는 왜 우리가 찾아야 되는지 그리고 여성에 대한 능욕·능멸·모욕 이런 게 하나의 놀이가 되는데 도대체 법과 정책을 만드는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보다는 가해자가 더 마음 편하게 사는 세상인 것 같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되게 가슴 아팠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49.8%밖에 안 돼서 절반이 넘는 성폭력 범죄 사건이 기소조차 되지 않는 이런 현실이고요. 더불어서 디지털성범죄의 집행유예 비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형사사건 집행유예 비율이 2020년 기준 34.3%인데 디지털성범죄 관련해서는 48.5%, 굉장히 높습니다.

이만큼 디지털성범죄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고 사법부가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보여 주는 단적인 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한테 이야기해도 부모도 그냥 ‘괜찮지? 그냥 넘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사법부도 비슷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낮은 기소율 그리고 자의적인 양형기준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는 어떻게 강화시켜야 될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제가 지난번에 8월 1일 날 이미 여가부에 질의를 했던 사안인데요. 지금 성폭력방지법에 의하면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 이후 6년 동안 100만 건이 넘는 것을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매뉴얼을 하든지 가이드를 작성을 해서 해 달라고 요청했던 게 지금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법무부부터 먼저 말씀 주시고요 여가부 말씀 주세요.

○**법무부형사법제과장 한상형**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결과로 말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희가 디지털 성범죄 특히 딥페이크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새로 구성요건을 신설하고 법정형을 높이는 한편 대검에서도 발표했습니다만 구속수사 원칙이라든가 구형 기준을 강화하고 그리고 좀 장기적이기는 합니다마는 법원의 양형기준도 저희가 개정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한다 그러면 지금처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낮은 선고 판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여가부 이야기해 주세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위원님이 이런 구상권 부분에 대해서 성폭력방지법을 의원발의하신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 구상권의……

○**전진숙 위원** 아니, 제가 발의한 게 아니고 구상권은 이미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발의 중이신 걸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진숙 위원** 아니, 구상권 청구하게끔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맞습니다.

○**전진숙 위원** 지난번에도 법을 확인을 안 하고 오셨는데 또 안 하고 오신 건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어려운 부분이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사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위탁기관 지정에 대한 추가적인 입법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예, 같이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법정 형량이 약하고 촬영물에 대한 삭제 비용을 국가가 지금 전액 부담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어쩌면 범죄자에 대해서, 가해자에 대해서 관용적이고 뜨뜻미지근한 정부의 이런 태도가 디지털성범죄를 오히려 확산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시고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근 위원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위원입니다.

먼저 여가부에 물도록 하겠습니다.

여가부 정책 중에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디지털성범죄피해센터라는 건 결국 이미 플랫폼에서 성착취물들이 한 판 유통이 됐을 때 그걸 사후적으로 삭제를 요청하는 활동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 앞에서 피해자들은 큰 상처를 입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가부의 정책이 그렇게 사후적으로 삭제 요청하고 이런 소극적인 행정에 머물면 안 되고 아예 처음부터 성착취물 같은 것들이 그런 큰 플랫폼 같은 데에서 유포되고 게재되지 않도록 하는 데 저는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가부가 오히려 과방위나 방통위 이런 데하고 잘 협의해서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데 행정의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현재 아동·청소년에 관련해서는……

○김남근 위원 과기부에 물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7개의 주요 AI 기업 구글 오픈AI 메타 이런 데가 이미 AI 자율 협약을하면서 AI 생성물에 대해서 워터마크 표시하겠다 이렇게 서약한 것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관 엄열 예,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래서 이미 미국에서도 주요 AI 기업에서는 규범화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의무화하겠다라고. 그리고 유럽에 있어서 디지털서비스법에서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아마 그 7개 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그런 데 대해서는 딥페이크 영상 업로드를 할 경우에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하기로 한 것들은 알고 있지요, 법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관 엄열 예, 딥페이크 관련해서 표시하도록 돼 있고요……

○김남근 위원 그런데 왜 한국에 있는 우리 과기부나 방통위는 그렇게 소극적입니까? 왜 그걸 권고사항으로 해요?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서는 워터마크 의무화하고 그걸 보이게 하느냐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겠지. 영화 같은 경우에 자막에 워터마크 나오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런 건 안 보이게 하는 방식으로 워터마크를 의무화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는 사람들이 이게 딥페이크 영상물이라는 걸 알 수 있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는 의무화하고 그것을 보이게 하느냐 안 보이냐에 있어서는 그 사안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AI 딥페이크를 한 것인데 그것에 워터마크 표시가 안 돼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플랫폼 스스로 검색을 통해 가지고 다 찾아내도록 하고, 이건 기술적으로 이미 다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것에 대해서는 삭제하도록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도 의무화하는 것들을 규범화 못 합니까? 그걸 다 자율에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큰 피해의 사태들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저는 과기부하고 방통위가 그런 AI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 미칠 수 있는 큰 해악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규범들을 만드는 것에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관 엄열 AI법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게 권고하는 거여서는 안 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관 엄열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의무조항입니다.

○김남근 위원 의무화해야 되고 플랫폼 스스로 그 의무를 가지고 삭제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포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정책의 초점이어야지 어떻게 유포는 다 되도록 하고 사후적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적으로 삭제 요청하고 이런 데 초점이 맞춰집니까. 그런 건 피해자들한테 다 백해무익한 거예요, 이미 피해는 다 발생했는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게 올라오지 않도록 막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지요. 동의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관 엄열 예, 동의합니다.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선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달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 교육부의 배동인 정책기획관님, 죄송하지만 조금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면)

나오는 동안,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방에 주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유는 지금 피해자·피의자 70%가 10대들인데 이 10대들에게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 운영자의 불법, 특히 성범죄 부분은 삭제할 의무를 법제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 국회에서 입법화를, EU나 서독이나 프랑스처럼, 그렇게 선진국처럼 이제 선을 긋고 의무화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예방 부분에서 지금 교육부에서는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초등학교 도덕

시간 있지요? 성교육 시간이 있습니까?

○**교육부정책기획관 배동인** 일단 특정 과목의 성교육 시간이 아니고 범교과 주제라고 하는데 개별 과목별로 어떤 계기나 이런 걸 통해서 성교육을 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리고 중고등학교에는 정보 교육 있지요? 디지털 윤리 다 들어가 있습니까?

○**교육부정책기획관 배동인** 그것도 다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이달희 위원**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 사례를 계기로 해서…… 그동안 우리 학교에서,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창조 그런 교육에 의해 가지고 디지털 콘텐츠 창조, 코딩이나 이런 것 굉장히 기술력을 많이 가지는 걸 장려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해서, 또 거기에 추가해서 디지털 윤리 교육을 지금부터 확실하게 시켜야 되고 그 디지털 윤리 교육에는 딥페이크 같은 이런 성범죄는 반드시 경찰 수사를 받는 범죄고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까지 확실하게 디지털 윤리를 정확하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청소년들이 경찰의 수사 대상이고 범죄자가 되고 처벌이 된다고 하면 이런 놀 이를 하겠습니까? 확 줄어들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교육부정책기획관 배동인** 위원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이고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기존의 양성평등 교육의 일환으로 그 안에 성폭력 교육이라든가 성인지 감수성 교육 내지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1년에 한 15차시 정도 수업을 해 왔는데요, 교육을 해 왔는데 저희들이 좀 더 중점을 두고 비중을 더 강화하려고 하는 부분이 디지털 관련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디지털 윤리라든가 시민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라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달희 위원** 그런데 그런 교육들이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아, 모호하고. 아까 디지털 콘텐츠 교육하는 걸 봤는데요 그 영상을 보여 줄 수는 없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고 그 콘텐츠를 만든 학생들이 범죄자가 되고 처벌이 된다는 그 구체성을 좀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정책기획관 배동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가부의 콘텐츠도 많이 활용하고 또 저희가 지금 자체 개발하고 있는 콘텐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경찰청 수사국장님, 잠시만 여기로 좀 나와 주십시오. 얼굴 좀 보고 이야기합시다.

○**위원장 이인선** 지금 카메라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요.

○**서범수 위원** 수사국장님 이지요?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예,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국수분에 수사국이 있고 사이버수사국이 있지요?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사이버수사국은 지난해 조직 개편하면서 수사국 안으로 흡수가 돼서……

○서범수 위원 없어졌어요?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사이버수사심의관이 제 밑에 같이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사실은 사이버심의관이 오셔야 되는데, 그렇지요?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예,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왜 국장님의 오세요? 사이버 잘 모르시잖아. 잘 압니까?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제가 서울청 수사부장을 마치고 와서 웬만큼 압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저는 왜 수사국장이 왔나, 사이버수사국장이 와야 되는데? 그거는 빠지고 심의관이 계시네.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예.

○서범수 위원 이달희 위원님도 그러시고 김남근 위원님도 그러시는데 예방이 중요해요. 예방이 더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처벌하는 게 예방일 수 있다. 아까 장철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사이버수사 하면 경찰이 제일 잘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맞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면 수사국장님께서 특단의 의지를 가지고, 이거 정말로 척결 한번 하자라는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7개월간 집중단속을 할……

○서범수 위원 특진이라도 걸어 놓은 게 있어요?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예, 지금 특진을 많이 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걸어 놔야 경찰관들이 열심히 뛰어요, 열심히. 예를 들면 조금 전에도 어제인가 텔레그램에 대한 내사를 하겠다, 사실은 방법이 있나요?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지금 구상하고 계획도 다 구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그걸 지난번 n번방처럼 그렇게 흐지부지하시지 말고 이번만큼은 특단의 조치, 아니면 프랑스나 저런 데 자문을 구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의지를 갖고 좀 해 주십시오.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예, 알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해요. 그리고 아까 학생들이 ‘아, 이거 내가 잘못하면 체포될 수 있겠구나. 처벌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위화감이 좀 있기는 있어야 돼요.

국장님, 이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예.

○서범수 위원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지금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정책기획관 배동인 예, 기본적으로는 분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서범수 위원 분리합니까? 분리인데 그러면 언제부터 분리를 해요? 학폭 지나고 분리

합니까?

○**교육부정책기획관 배동인** 확인 즉시 분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서법수 위원** 학폭 그거 하기 전에, 심의하기 전에?

○**교육부정책기획관 배동인** 예, 그 사항을 인지한 경우에 즉시 분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법수 위원** 진짜 그런가요? 안 그렇다 그러던데?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교육부정책기획관 배동인** 예, 사항을 인지한.....

○**서법수 위원** 그다음에 국방부에서 오신 분.

○**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 유균혜** 예, 인권단장입니다.

○**서법수 위원** 발언을 한 번도 안 하셨지요?

○**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 유균혜** 예.

○**서법수 위원** 그런데 국방부가 조금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냐. 지금 이것 가지고 난리인데 국방부에서 올라오는 것 보면 군 인권 관련 현안회의 9월 26일. 이거 인권 관련 현안회의에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에 대한 어떤 회의를 하거나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 유균혜** 아닙니다. 차관님께서 음란물 대응 TF를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있으십니다.

○**서법수 위원** 이렇게 늦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 난리를 치는데.

○**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 유균혜** 지금 피해자들이 계속 식별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13명이지만 계속 늘어.....

○**서법수 위원** 그러니까 그걸 미리미리 경각심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9월 26일이면 추석 다 지나고 조용해질 때인데.....

○**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 유균혜** 추석 직전에 전군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은 다 지시를 내릴 겁니다.

○**서법수 위원** 아직 안 내렸습니까?

○**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 유균혜** 저희들이 교육자료를 지금 여가부랑 협의해서 최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서법수 위원** 지금 이 일이 있은 지가 언제인데 이제 계획을 짜고 있어요?

○**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 유균혜** 위원님, 저희들이 교육자료는 구체적으로 만들고 있고 30분 이상 강의할 수 있도록.....

○**서법수 위원** 30분 이야기할 것도 없잖아요. 이것 5분이면 되지.

○**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 유균혜** 미리 관련된 공지사항들은 다 공문으로 내린 사항입니다.

○**서법수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인선**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위원** 신 차관님, 우리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는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업무를 하는데 저희가 외부 사이트, 민간 사이트에 있는 영상물을 직접 삭제할 수는 없고 결국 삭제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그에 따라서 삭제해 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방식인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김한규 위원** 그러면 피해자 한 명당 통상적으로 디성센터에서 삭제 요청 공문을 평균 몇 건이나 보냈는지 알고 계십니까, 피해자 한 명당?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인권진흥원 나와 계시니까 거기 여쭤보시면 어떨까요?

○**김한규 위원** 1500건입니다. 피해자 한 명당 1500건의 삭제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정말 많은 해외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불법 사이트, 해외에서는 불법이 아닐 수 있지만 그런 사이트들의 99%가 해외에 있는데 우리나라 요청에 신속히 응하지 않고 아니면 아예 안 응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그럴 걸로 생각합니다.

○**김한규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피해자 보호가 좀 미흡한.....

○**김한규 위원**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대책을 마련하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다 하는데 우리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 사이트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김상숙 위원님께서 만약에 텔레그램이 이런 문제가 계속 있는데 우리 요청에 대해서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 사이트의 접속을 금지하든지 우리나라에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그런 사이트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김한규 위원** 텔레그램이 대표적인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피해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일단 말씀하신 대로 국내법상 의무이행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김한규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제 영상이, 딥페이크 영상이 어디 해외 사이트에 올라갔다, 그런데 디성센터에서 요청했는데도 그쪽에서 삭제 안 해 준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정부는 그런 피해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조언을 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그냥 답이 없는 건가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운이 나쁘다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삭제를 명령하거나 이러기는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한규 위원** 방법이 없지요, 결국.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그렇지만 해외 공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

○**김한규 위원** 실상은 디지털 장의사를 찾아가요. 그분들이 우리 대신 삭제를 해 주고

최악의 상황은 해킹을 해서 삭제해 줍니다. 피해자들은 그렇게라도 하고 싶을 거예요. 해외 사이트 삭제하는 데 건당 10만 원, 경우에 따라서는 한 200만 원씩 요청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피해자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쭙고 싶은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 대책이 없는지, 우리가 오늘 계속 논의해도 결국은 이런 피해자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못 찾은 것 같아요. 텔레그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답을 못 찾았어요. 하지만 차관님은, 정부는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감 때까지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정부 대책 할 때 이런 부분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이신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욱 위원 울산 남구갑 김상욱입니다.

법무부 형사법제과장님 잠시……

○법무부형사법제과장 한상형 예, 준비됐습니다.

앞으로 나갈까요?

○김상욱 위원 예, 잘 안 보여서.

지금 피의자들이 보면 10대들이 많지요. 그렇지요?

○법무부형사법제과장 한상형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욱 위원 10대들이 많고 사실 논란의 소지도 있고 또 반대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촉법소년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형사미성년자 나이에 관한 부분. 특히 이런 AI나 아니면 디지털 관련된 범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10대들의 범행률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지 잠깐 간단하게만 말씀 들을 수 있을까요?

○법무부형사법제과장 한상형 21대 국회에서 저희가 촉법소년의 나이를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정부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다만 심사가 안 된 상태에서 폐기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자녀가 있는데 제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애네들이 촉법소년이라는 걸 압니다. 대개 이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가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합리적으로 조절한다는 것은 어린이들을 반드시 감옥에 보내겠다는 건 아닙니다.

아까 장철민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범죄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은 결국에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벌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범행에 진입하는, 물론 모든 범죄자가 이성적이지는 않지만 상당수들은 그렇거든요. 만약에……

○김상욱 위원 과장님,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법무부형사법제과장 한상형 죄송합니다.

○김상욱 위원 제가 말씀 중간에 좀 더 제 의견을 말씀 올릴 테니까 이따 끝나면 마저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법무부형사법제과장 한상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욱 위원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사법제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형사법제과장님이고.

○법무부형사법제과장 한상형 맞습니다.

○김상욱 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사처벌 대상이라 하더라도 보호처분의 종류를 다양화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법무부형사법제과장 한상형 그렇습니다.

○김상욱 위원 또 보호처분을 할 때 경우에 따라 감호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성범죄자들은, 성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된 사람들은 폭력과는 또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다른 보호처분이 나갈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딥페이크 범죄뿐만 아니라 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성 인식이 잘못된 또 성 폭력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소년범들은 교육을 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법무부형사법제과장 한상형 그렇습니다.

○김상욱 위원 그러면 일반 폭력범이나 사기범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이 수용하거나 같은 교육, 같은 대상으로 가서 될 문제가 아니라 특수하게 다른 감호 설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구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도 먼저 부탁드릴게요.

○법무부형사법제과장 한상형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결국에는 아이들을 감옥에 보내겠다는 게 아니라 가능성은 열어 둬서 조심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아이들에 대한 것은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다양한 소년보호처분들 그리고 아마 저희가 새로 개발하게 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게 될 텐데요. 아이들을 저희가 꾸짖어야 되지만 결국에 안고 가야 되는 소중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최선의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욱 위원 실질적으로 좀 연구를 해 주십시오.

○법무부형사법제과장 한상형 그래서 범죄 환경이 워낙에 많이 변하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특별히 서영교 위원님 3차 추가질의, 단독입니다. 말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저 신청했는데, 저 간사님에 신청했는데.

○**위원장 이인선** 간사 협의해서 한 분만 하는 걸로……

○**임미애 위원** 아니요, 저 발언해야 돼요. 일부러 쫓아왔어요.

○**김한규 위원** 제가 못 챙겼던 것 같은데 3분이니까 한 분만 더…… 봐주십시오.

○**위원장 이인선** 아마 아까 조사할 때 자리에 없었던가 봅니다.

○**임미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예, 알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 요청을 좀 한 건데요.

한상형 법무부 과장님, 10대 피의자 아까 우리 위원님 얘기에 의하면 76%가 가해자고 62%가 10대 피해자라는 거예요. 10대가 못된 짓을 10대에게 하면 처벌받아야 돼요. 안일하게 볼 것 없어요. 저는 더 확실하게 해야 ‘내가 촉법소년이고’ 이런 얘기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10대가 10대에게 가장 못된 짓을 해요. 제가 그 법안 냈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냅시다. 다시 내서 하고요.

그리고 대신 중요한 건 교육부에서 예방교육을 확실하게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제에 관한 내용들을 여가위에다가 자료 가지고 오세요, 대책. 그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려고 질의를 마지막에 요청했고요.

국방부,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목소리는 똑똑하게, 모양도 똑똑하신데 왜 내용, 대책이 그게 뭡니까?

○**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 유균혜** 위원님, 저희들은 22년부터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전 장병과 군부대에 시키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성인지 교육 하시고 그것 떠나서 이것에 대해서 아까 내가 자료 보여줬잖아요. 그것 관련한 것 못 찾는다고 이야기하는 경찰도 문제고, ‘철저히 추적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두 사람 다.

○**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 유균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래서 지금부터 철저히 추적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오세요.

○**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 유균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국가수사본부 국장님, 제가 전체에게 여쭤볼게요. 사실은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법무부 처벌기관이에요. 처벌되기 전에 이건 빨리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뭐라고 그러지만, 아까 대답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 고소 고발이 있어야 이게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지해서 가는데 여기서 제일 먼저 움직여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엄밀 정책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관 엄열** 예, 말씀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 정책관님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관 엄열**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제일 빨리 움직여야 되는 사람은 과기부예요. 그리고 방심위예요. 그렇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일괄적으로 얘네들이, 딥페이크가 만들어지거나 거기에서 노는 것

같은 느낌을 다 찾아낼 수 있잖아요. AI가 움직이면 또 AI로 그것 잡아낼 수 있잖아요. 그것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것 조금만 정보 듣고 모양만 생겨도 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워터마크 붙여 가지고 예방하게 하자고 했으면 이것 안일하게 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과기부에서도 그 대책 가지고 오셔야 돼요. 먼저 움직여 주셔야 되는 분들이…… 사람들은 빨리 처벌 이라지만 처벌이 아니라 처벌은 지금 이미 늦었어요. 지금 가야 되는데 안일하면 안 돼요.

제가 행안위원장 했는데 경찰 숫자 조금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철저히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은 엄열 정책관님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동수 심의국장님이에요. 워터마크 그리고 이것에 대한 예방책 빨리 가지고 오시고.

제가 오늘 우리 여가위원장님께 제안드리고 여가위원장님들께 제안드리는 것은 나라가 해야 돼요. 서범수 사무총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저는 이것은 여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라가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 전체 이름으로 나라가, 대통령이 이것 잘한다고 했는데 더 할 수 있게 하라고 우리가 요구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혹시 답변 좀 추가로……

경찰청 수사국장입니다.

○위원장 이인선 조금 계세요. 시간 주겠습니다. 잠깐만요.

방금 서영교 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임미애 위원 수사국장님 잠깐 답변……

○위원장 이인선 질의부터 먼저 하시고 마무리에 나와서 하라고 할게요.

○임미애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할 얘기들의 많은 부분을 서영교 위원님이 해 주셨는데요. 각 부처의 역할들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엄열 정책관님, 제가 질문했을 때와 김남근 위원이 질문했을 때 정책관님의 답변이 달랐다는 것 혹시 인지하셨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관 엄열 예, 인지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왜 다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관 엄열 아까 권고조항이라고 말씀드렸다가 의무조항이라고 말씀……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자율규제라고 얘기하셨는데 김남근 위원님 질문했을 때는 AI 기본법에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관 엄열 예, 그것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미애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관 엄열 AI 기본법에 지금 발의되어 있는 사항들이

해당 사업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서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입니다. 의무조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익……

○**임미애 위원** 표시하지 않았을 때, 않고서 유통되는 것에 대해서는 플랫폼에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나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관 엄열**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그립니다. 처벌조항이나 실효성 확보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아직, 그래서 제가 임의적으로 권고의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임미애 위원** 김남근 위원님의 똑같은 질문을 하신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관 엄열** 정확합니다.

○**임미애 위원** 미국에서는 강력한 처벌규정이 있는데 왜 한국에서는 그것을 마련하지 못하느냐라고 하셨을 때 정책관님 답변은 ‘AI 기본법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정책관님이 아까부터 하셨던 말씀의 상당 부분 신뢰성에 금이 간다는 것인지하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관 엄열** 그 말씀 다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당 조항이 지금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기정통부는 같은 입장을 견지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우리는 의무조항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의무조항으로 당연히 되어야지요. 문제는 그것을 위반한 불법 유통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결국 거기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관 엄열** 위원님, 그 실효성 확보와 처벌조항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에 대한 어떤 부담이나 규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을 신중히 해서……

○**임미애 위원** 그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렵다면 무엇이 어려운지 이야기 해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열심히 얘기했지만 플랫폼에서 이 영상이 불법적으로 돌아다닐 때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법에는 무엇을 담아야 되는지를 법무부하고도 협의하셔야 되는 거고요. 과기정통부에서는 정부안을 내셔야 되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관 엄열** 과방위에서도 관련되어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논의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플랫폼에 대한 규제와 관련된 논의, 입장 정리해서 여가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관 엄열**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선** 이것으로 법안 및 결산에 대한 대체토론과 현안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면질의하실 분 주시고요.

서면질의를 신청하신 분은 김한규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장철민 위원님, 김선민 위원님,

김남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님, 백승아 위원님, 한지아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서면질의 제출되었습니다.

보다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28항까지 26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사일정 제29항 및 30항의 2023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딥페이크 관련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야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계시고 정쟁을 떠나서 그야말로 협치의 정신으로 함께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로 했고, 여기 배석해서 협조하시는 각급 기관에서 오신 분들은 정말 오늘 약속하신 만큼 위원들께 가서 상세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안을 신속히 논의해 주셔야 됩니다. 사후약방문처럼 시간 지나서 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정확한 설명을 통해서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신영숙 장관직무대행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 그리고 보좌진,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예결과 각급 상임위가 겹쳐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김남근 김남희 김상욱 김선민 김한규 백승아 서범수 서영교 이달희 이연희
이인선 임미애 장철민 전진숙 조은희 한지아

○출장 위원(1인)

김용만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입법심의관 김정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여성가족부

장관직무대행 신영숙

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청소년가족정책실장 황윤정

여성정책국장 최은주

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

가족정책관 최성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직무대행 김은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손연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윤효식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직무대행 하유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신보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장 박성혜
교육부
정책기획관 배동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엄열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한상형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장 유균혜
경찰청
수사국장 김병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 이동수

【보고사항】

○의안 회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84)

이상 2건 8월 2일 회부됨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6.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4)

8월 7일 회부됨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2.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41)

8월 13일 회부됨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3.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3.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3. 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5)

이상 3건 8월 14일 회부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6. 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6.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3)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2024. 8. 16.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4)

이상 3건 8월 19일 회부됨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9.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5)

8월 20일 회부됨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0.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89)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0.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0.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5)

이상 3건 8월 21일 회부됨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1.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1.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1)

이상 2건 8월 22일 회부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3.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8)

8월 26일 회부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8. 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6)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8.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8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8.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8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8.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8.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6)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8.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8)

이상 6건 8월 29일 회부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9. 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0)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9. 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9.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3)

이상 3건 8월 30일 회부됨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30.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30. 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30.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7)

이상 3건 9월 2일 회부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2. 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2. 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9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2. 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13)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2024. 9. 2. 정부 제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2.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8)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2.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2.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4)

이상 8건 9월 3일 회부됨

○관련 의안 회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3. 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8)

8월 1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존치 요구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

(2024. 8. 16. 강경숙 의원 등 17인 발의)(의안번호 2202879)

8월 1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2. 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8)

9월 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예비심사기간 지정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2024. 9. 2. 정부 제출)

이상 2건 9월 3일 예비심사기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정 30분 전까지로 지정됨

○보고서 제출

2023년도 양성평등정책 연차보고서

(2024. 8. 27. 정부 제출)

2023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2024. 8. 30. 여성가족부 제출)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2024. 8. 30.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4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2024년 재정 관련 자료

(이상 3건 2024. 9. 2. 정부 제출)